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중대형차량, 구리, 목재
주요 수출품 한국 HSK와 미국 HTSUS 비교 해설

HTSUS : Harmonized Tariff Schedule USA

HSK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Korea



저자

김성채(PwC 관세법인 한국HS연구원 원장)

김성채 원장은 1989년 관세청 입사 후 관세평가분류원, 재정경제부 관세국 등에서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HS 품목분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PwC 한국HS연구원 원장으로 <주간 관세무역정보>에 품목분류해설을 기고하고 있다.

일러두기

-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직·간접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및 관세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된 품목분류해설 가운데 미국 관세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품목번호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엮어 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 관세청이 발표한 ‘미국 품목별 관세 부과대상 연계표’를 참고해 작성했으나, 해석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및 수출 시점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과 관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참조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적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미국 수입세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품목번호는 HTS 홈페이지(<https://hts.usitc.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문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 Code)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며, 7단위 이하는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물품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 시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중심으로 미국의 HTSUS와 한국의 HSK를 비교·분석한 자료로,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39호·제2140호·제2141호·제2145호·제2163호·제2167호·제2168호에 수록된 품목분류해설(저자 김성채)을 엮은 것입니다.

제2139호(2025.7.21.) : 알루미늄제품과 파생제품
제2140호(2025.7.28.) : 철강제품과 파생제품
제2141호(2025.8.4.)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2145호(2025.9.1.) : 구리제품
제2163호(2026.1.19.) : 목재 및 목재가구
제2167호(2026.2.16.) : 철강제품과 파생제품 추가 품목
제2168호(2026.3.2.) : 중대형 차량 및 버스

본 자료는 관세사와 수출입 기업 실무자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주간 관세무역정보’ 카테고리에서 E-BOOK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발간 배경 / 1

1.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조치(2026.3.1. 기준) 1
2. 미국의 관세 조치 변동 현황 2
3. 한눈에 보는 날짜별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2026.3.1. 기준) 4

I. 철강 및 파생제품 / 7

1. 개요 및 경과 9
2.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제품의 HSK 코드 분석 14
3.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34

II.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59

1. 개요 및 경과 61
2.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제품(제76류)의 HSK 코드 분석 64
3.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69

III. 자동차 및 중대형 차량·버스 / 85

1. 개요 및 경과 87
2. 미 수입조정 대상 자동차, 경량트럭 및 부품의 HSK 코드 분석 88
3. 미 수입조정 대상 중대형 차량·부품 및 버스의 HSK 코드 분석 114
4. 한 눈에 보는 수입조정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41

IV. 구리 및 파생제품 / 145

1. 개요 및 경과 147
2. 미 수입조정 대상 구리제품의 HSK 코드 분석 147

V. 목재 및 목재가구 / 159

1. 개요 및 경과 161
2. 미 수입조정 대상 목재 및 목재가구류의 HSK 코드 분석 162

발간 배경

1.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조치(2026.3.1. 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품목별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쿼터 등 수입조정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1기 때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극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는 2기에 들어서며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상향하고 있다.

관세 대상에 중복 적용될 경우 적용 순서는 ‘① 자동차·자동차부품 ② 철강·알루미늄 ③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관세’로, 자동차, 철강, 구리 등 제232조 조치 대상 중 중복 규정돼 있는 품목은 자동차·부품 관세만 적용된다. 함량가치 과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구리 품목의 경우 함량 부분은 품목별 관세가, 비함량 부분은 글로벌관세가 부과된다.

● 함량가치 과세 예시 ●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0%	MFN 또는 한·미 FTA 세율	+ 품목별 관세 50%
비함량	90%	MFN 또는 한·미 FTA 세율	+ 글로벌관세 10%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수출품목의 관세율은 급변하고 있어 같은 품목군도 정책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산업계 요청에 따라 적용 범위는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 1차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고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 명단에, 화장품 용기를 알루미늄 파생상품 명단에 포함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출처: AI 생성 이미지)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연 3회(매년 5월, 9월, 다음해 1월), 자동차품목에 대해 연 4회(매년 1월, 4월, 7월, 10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 미국의 관세 조치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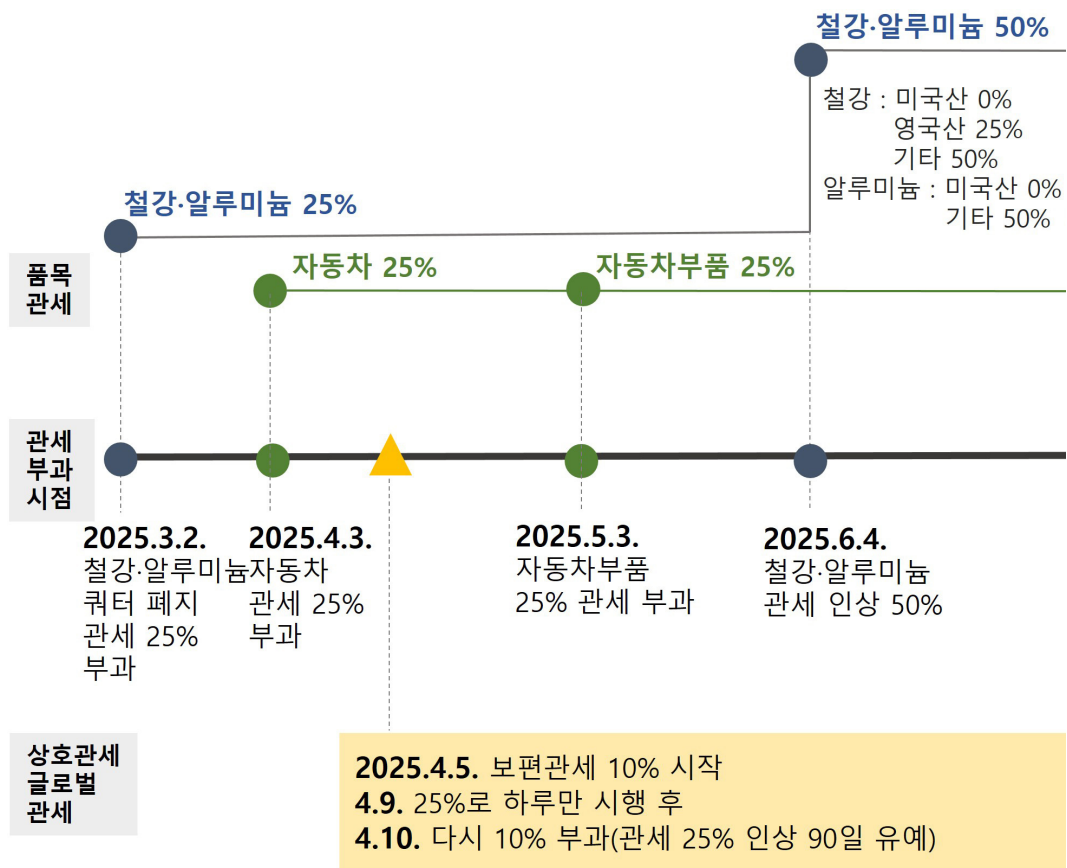
구분	근거	대상	세율	시행일	예외·특이사항
상호관세	IEEPA	모든 국가	10%	2025.4.5.	2026.2.20. 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폐지
			국가별 차등 (한국 15%)	2025.8.7.	
품목별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50% (한량과세)	2025.3.12. 25%로 시행 6.4. 50%로 세율 상향 6.23. 세탁기 등 품목 추가 8.18. 400여 개 품목 추가	영국산 제품은 25% 파생제품은 철강·알루미늄 함유 부분만 품목별 관세 적용

구분	근거	대상	세율	시행일	예외·특이사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5%	2025.4.3. (자동차) 5.3.(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관세 대상이면 다른 제232조 관세 적용 제외(우선순위 조항)
			15%	2025.11.1. (한·미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	
		구리 및 파생제품	50% (함량과세)	2025.8.1.	원자재구리(광석, 정광 등)·스크랩구리는 제외 자동차·부품 등 중복 적용되는 물품은 자동차 관세 우선적용 가능
		목재 및 파생제품	목재 10%	2025.10.14.	수입국별 관세 상한 설정 : 영국산 10% 한도, EU·일본산 15% 한도
			주방용 캐비닛, 목제가구 25%	2025.10.14. (2026.1. 의자 30%, 목제가구·가구 부분품 5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1년 연기 발표)	
		중대형 차량·부품 및 버스	중대형 차량·부품 25% 버스 10%	2025.11.1.	중대형 차량 USMCA 원산지 요건 충족 시 비미국산 가치에만 관세 부과
		반도체	미 품목번호 기준 3개 품목 25%	2026.1.15.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및 소비자용 제품 활용 시 관세 면제
글로벌 관세	무역법 제122조	모든 국가	10%	2026.2.24.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즉각 10% 발표 및 포고문 서명

※ 2026.3.1. 기준(자료 : 관세청), 시행일 미국 동부시간

3. 한눈에 보는 날짜별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2026.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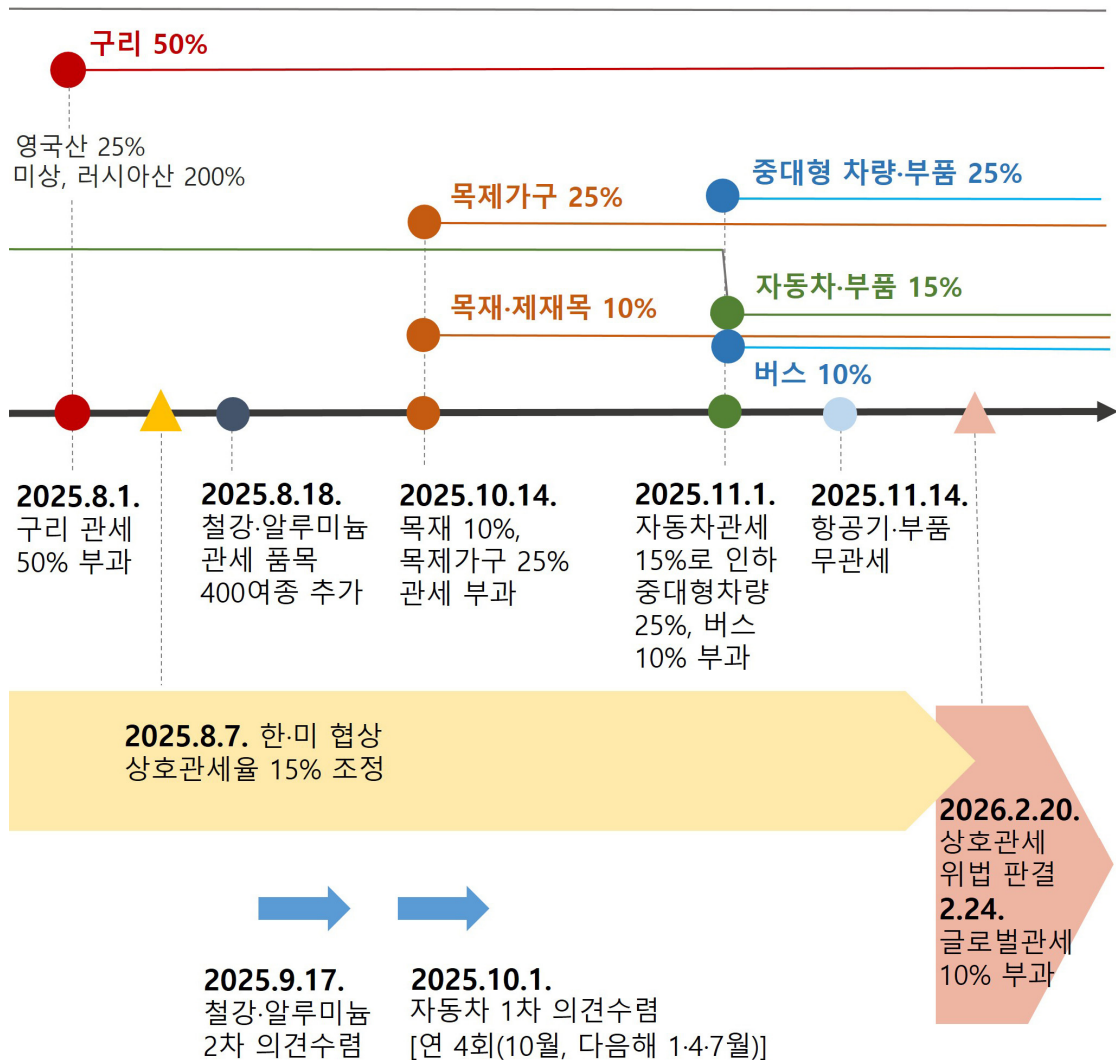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제품, 구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목재 및 목제 가구,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가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다.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2026.2.20.)에 따라 중지됐으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관세 10%가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적용된다.



2025.5.1.
철강·알루미늄 1차 의견수렴
[연 3회(5·9월, 다음해 1월)]

※ 관세 적용 우선순위

자동차 제232조 > 철강·알루미늄 제232조 > USMCA 관세 > 글로벌관세





I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철강 및 파생제품

I | 철강 및 파생제품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896)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6월 3일, 이를 다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철강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품별 관세율은 철강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철강 성분 이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또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포고문 10896의 이행을 위해 포고문에서 언급한 철강제품의 추가관세 부과를 위해 미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이하 'HTSUS'라 한다) 제99류를 개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Notice)했다.

이후에도 상무부는 새로운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까지 미국정부의 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896(2025.2.10.) :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포고문 10896의 부속서에 따라 미국의 HTSUS 8단위 코드 기준으로 177개 품목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포고문은 철강 수입 증가로 미국 내 철강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미국의 산업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강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수입조정 대상 177개 중 대부분인 165개 품목이 HS 제73류에 집중돼 있었다. 제73류 이외의 물품, 그 자체로 철강이 본질인 상품은 아니나 성격상 철강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84류와 제94류의 물품 일부(12개 품목)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포고문 10896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부속서가 아닌 본문이다. 포고문 본문의 제(1)항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적용받던 쿼터(quot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과거 2018년 3월 8일자 포고문 9705(미국 철강 수입조정)에서 언급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원칙으로 회귀한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¹⁾.

2018년 3월 8일 포고문 9705를 통해 미국은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72류와 제73류의 주요 철강제 자재 및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조정 조치를 공포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각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체결했던 대안적 조치[쿼터, 저율할당관세, TRQ(Tariff Rate Quota) 등]를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사실상 유예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결과 포고문 9740(2018.4.30.)을 통해 25% 관세 부과 대신 수출 수량 제한(절대 쿼터)을 적용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이 당시 적용된 쿼터는 2015~2017년 기간 중 평균 수입량의 70%에 해당하는 263만톤이다.

즉, 포고문 10896은 이러한 예외 조치(쿼터, TRQ 등)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처럼 쿼터를 적용받아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국가들도 다시 2018년에 세워진 기본 정책인 ‘25% 관세’ 체제로 강제 복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출하던 철강제품에 갑자기 추가관세

1) (1) The provisions of Proclamation 9740 with respect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South Korea ... <중략> ... shall be ineffective as of 12:01 a.m. eastern time on March 12, 2025. ... <중략> ... As of 12:01 a.m. eastern time on March 12, 2025, all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shall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ad valorem tariffs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과 관련한 포고문 9740은 2025년 3월 12일부터 무효화되며 ... <중략> ... 2025년 3월 12일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포고문 9705에서 규정된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가 부과된 것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시각에서는 25% 추가관세가 기본 베이스였고 그동안 한국 등에 제공했던 쿼터는 일시적인 ‘관세 면제권’이었으며, 이제 그 면제권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일 것이다.

2) 미국 상무부 공고(2025.3.10.) : 포고문 이행을 위한 HTSUS 제99류 개정 공고²⁾

포고문 10896 공포 이후 2025년 3월 10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연방관보를 통해 포고문 10896의 이행과 관련한 HTSUS 개정사항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포고문 10896의 부속서에 언급된 177종의 품목만 아니라 기존 포고문 9740 등에 따라 수입쿼터가 적용되던 물품까지 포함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부속서상 목록 177종 이외에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에 따라 25%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i)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6호 (j)항의 물품

- * 제7208호, 제7209호, 제7210호, 제7211호, 제7212호, 제7225호 또는 제7226호의 평판압연제품
- * 제7213호, 제7214호, 제7215호, 제7227호 또는 제7228호의 봉
- * 제7216호의 형강(소호 제7216.61호, 제7216.69호 또는 제7216.91호 제외)
- * 제7217호 또는 제7229호의 선
- * 소호 제7301.10호의 널말뚝
- * 소호 제7302.10호의 레일
- * 소호 제7302.40호의 이음매판과 받침판
- * 소호 제7302.90호의 기타의 철강제품
- * 제7304호, 제7305호 또는 제7306호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 * 제7206호, 제7207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일차제품과 반제품
- * 제7218호, 제7219호, 제7220호, 제7221호, 제7222호 또는 제7223호의 스테인리스강의 제품

ii)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6호 (l)항의 물품

- * 미국 소호³⁾ 제7317.00.30호의 나선가공됐고 동력구동식 수공구에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2) ‘미국 내 철강 수입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6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11249, 문서번호: 2025-03598

3) HS 품목분류표에서 호(heading)는 4단위 코드를 가리키고, 소호(subheading)는 6단위 코드를 의미한다. 미국 HTSUS에서는 8단위 코드를 ‘subheading’이라 표현하고 10단위 코드를 ‘statistical reporting number’라고 표현한다. 여기서는 HS(HTSUS 공통) 4단위 코드를 호, 6단위 코드를 소호로 구분하고, HTSUS 8단위 코드를 ‘미국 소호’, 10단위 코드를

못 등

- * 미국 통계코드 제7317.00.5503호, 제7317.00.5505호, 제7317.00.5507호, 제7317.00.5560호, 제7317.00.5580호 또는 제7317.00.6560호의 못 등
- * 미국 소호 제8708.10.30호의 범퍼 스탬핑
- * 미국 소호 제8708.29.21호의 바디 스탬핑

3)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947(2025.6.3.) : 추가관세 25%를 50%로 인상

2025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10896과 그 이행 공고를 통해 발표된 수입조정 대상 물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4) 미국 상무부 공고(2025.6.16.) :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⁴⁾

이후 2025년 6월 16일,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연방관보를 통해 포고문 10896 및 10947의 이행과 관련한 HTSUS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철강제품 추가관세를 이전의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리스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 관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 공고를 통해 냉장고(제8418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세탁기(제8450호), 건조기(제8451호), 전기오븐(제8516호) 등 8종의 물품군(미국 통계코드 기준 11개 품목)이 추가로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5)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 수입조정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⁵⁾

그러나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어서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6에 따른 철강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고했다. 이 공고에서는 기존의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73류 일부 물품이 추가로 편입되는 한편, 철강재료를 사용하는 기계류 및 그 부분품 류가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철강제 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1)~5) 포고문 및 공고에서 언급된 물품의 상세 목록과 적용세율은 현재 미국의 HTSUS 제99류(Chapter 99)의 제3절(Sub-Chapter III)에 기재돼 있다⁶⁾.

¹⁾ '통계코드'라 한다.

⁴⁾ '미국 내 철강 수입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6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90 FR 25208, 문서번호: 2025-11067

⁵⁾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포함 절차의 채택 및 규정(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Inclusions Process)', 연방관보 번호: 90 FR 40326, 문서번호: 2025-15819

HTSUS의 제99류는 일반적인 품목분류(제1류~제97류)와 달리, 미국정부가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별 관세 및 무역 조치를 규정하는 섹션이다. 국제 표준인 HS 협약상 품목분류표 체계를 제1류~제97류와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잠정적 입법 조치(Temporary Legislation)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관세율표에 기재된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반대로 특정 조건하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들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301조 등에 의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또는 안보 목적의 관세 부과,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할당관세(Quota) 관리 등이 포함된다.

6)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⁷⁾

2025년 2월, 3월, 6월, 8월을 거치면서 철강을 원료로 하는 수많은 제품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돼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세율 이외에 추가관세 50%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2025년 11월 한·미 관세협상 이후 12월 4일자로 미국 상무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라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등을 전면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수입조정 대상 HTSUS에 해당하더라도 이 공고에 규정된 항공기 부분품인 경우 추가관세에서 면제돼 해당 품목코드에 규정된 MFN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HTSUS 통계코드 제9903.02.81호에 명시돼 있으므로 수입조정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공기 부분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 코드 번호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 HTSUS 제9903.02.81호의 내용 ●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2
				General	Special	
9903.02.81	<u>1/</u>	Articles of civil aircraft (all aircraft other than military aircraft); their engines, parts, and components; their other parts, components, and subassemblies; and ground flight simulator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of South Korea, excluding unmanned aircraft, provided for in subdivision (v)(xxiv)(b) of U.S. note 2 to this subchapter..... <u>1/</u>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6) 품목별 관세 대상 물품의 HTSUS 코드 명세는 포고문과 공고의 부속서(Annex)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미국 HTSUS 개정판에도 반영돼 있다. 여기서 인용한 미국의 품목분류 코드는 HTSUS 2026(Rev 2)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7)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특정 관세 관련 요소 이행(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연방관보 번호: 90 FR 55964, 문서번호: 2025-21940

이 장에서는 수입조정 대상인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의 HTSUS 코드별로 우리나라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1)의 포고문 10896 부속서, 그리고 상무부 공고 중 2)-ii-, 4), 5)에 포함된 물품을 모두 통합해 설명하고자 한다⁸⁾. 상무부 공고 2)-i에 규정하고 있는 HS 4단위 및 6단위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⁹⁾

우선 제2항에서는 제72류와 제73류를 중심으로 미국이 지정한 수입조정 대상 물품과 그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HSK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하되 해당 물품과 관련한 HTSUS 세분류체계를 함께 제공해 대상 품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항에서는 제72류와 제73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 포함되는 수입조정 대상 물품(철강 파생제품)의 목록과 그에 대응되는 HSK 코드의 연계표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의 연계표에는 참고를 위해 해당 물품이 앞서 언급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조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제품의 HSK 코드 분석

관세율표 제72류와 제73류에는 철강 및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제72류에는 철강야금의 일차재료인 철강의 입상(粒狀) 또는 분상(粉狀) 원료나 블록, 잉곳과 같은 일차형상의 제품 그리고 압연이나 인발, 단조와 같은 1차 가공을 거친 제품,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이나 철강제의 봉, 형강, 반제품 등이 분류된다.

제72류의 물품은 최초 포고문상 부속서와 상무부 공고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와 함께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제72류 대부분의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앞의 1-2)- i 항 참조).

8) 여기서 언급한 철강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 대상 목록은 HTSUS 제99류 주 제16호 (l)항, (m)항 및 (n)항의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9) 본 도서에는 상무부 공고 2)- i 와 ii 관련 추가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일부만 연계표를 게재했다.

□ 제72류(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¹⁰⁾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0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10-1000 7216.10-2000 7216.10-3000	
7216.2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00	엘(L)형강		7216.21-0000	
7216.22	00	티(T)형강		7216.22-0000	
7216.3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00	- 유(U)형강		7216.31-0000	
7216.32	00	- 아이(I)형강		7216.32-0000	
7216.33	00	- 에이치(H)형강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16.40	0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40-1000 7216.40-2000	
7216.50	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50-0000	
7216.6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7216.69		기타			
7216.9		기타			
7216.91	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10	-- 구멍을 뚫었거나, 눈금을 새겼거나 흰 것 ¹¹⁾	ex ¹²⁾	7216.91-0000	
	90	-- 기타			
7216.99	00	기타		7216.99-0000	

10) 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만 수입조정 대상이며, 미국 정부의 포고문이나 공지에서 수입조정 대상 코드 중 특정 코드는 HTSUS 8단위로 표시된 반면, 다른 코드는 HTSUS 10단위로 표시된다.

형강이란 전 길이를 통해 횡단면이 균일한 물품으로 평판압연제품, 봉, 중공 프로파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¹³⁾.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 철강제의 형강이 분류되며 이러한 형강은 보통 블룸(bloom)이나 빌릿(billet)을 열간압연·열간인발·열간압출이나 열간단조나 단조해 제조한다. 이러한 공정 이외에 냉간처리나 드릴링, 펀칭 정도의 가공을 한 물품도 제7216호에 포함된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스트립을 용접한 방식으로 제조한 형강은 제7301호에 분류된다.

제73류에는 제72류의 물품을 추가가공해 만들어낸 중간 단계의 재료·부품이나 완성품이 분류된다. 포고문은 제73류 철강제품 중 제7303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제7302호의 일부 물품과 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기존의 수입쿼터 폐지에 따라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군에 해당한다(앞의 1-2)·i 항 참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제7303호의 주철제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을 제외한 제73류의 거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7301호 및 제7302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	7301.10-1000 7301.10-9000	
7301.20		형강(形鋼)		
	10	- 철과 비합금강의 것	7301.20-1000 7301.20-2000 7301.20-3000 7301.20-9000	
	50	- 합금강의 것		
7302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 책레일, 락레일,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 <후략>)		

11) HTSUS에서는 물품 세분류 시 그룹 구분을 위한 dash(-)를 사용하지 않으나 본 도서에서는 독자들이 세분류 체계에서 계층(hierarchy)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의로 dash를 사용했다.

12) HSK 연계 항목에서 'ex'로 표시된 것은 'ex-out'을 뜻하며 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연계됨을 의미한다. 즉 이 표의 행에서 한국의 HSK 코드 제7216.9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일부만 미국 HTSUS 코드 제7216.91.0010호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

파. 형강(形鋼) :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2.10		레일(Rail)		
	10	- 철과 비합금강의 것	7302.10-1010 7302.10-1090 7302.10-2010 7302.10-2090 7302.10-3010 7302.10-3090 7302.10-4010 7302.10-4090	
	50	- 합금강의 것		
7302.30	00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7302.30-0000	
7302.40	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7302.40-0000	
7302.90		기타		
	10 00	슬리퍼(크로스 타이)	7302.90-0000	
	90 00	- 기타		

제7301호에는 널말뚝과 두 개 이상의 스트립을 용접한 방식으로 제조된 형강이 분류되며 제7302호에는 철강제의 레일과 선로 건설재료가 분류된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7302호에는 철강제의 레일이 분류된다. 레일 자체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레일로 선로를 구성하는 경우 고정선로의 연결지점이나 교차지점에 사용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등은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 제7307호(수입조정 대상 1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7307.19		- 기타		
	30	-- 연성의 관 연결구	7307.19-0000	
	90	-- 기타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의 것)			
7307.21		- 플랜지			
	10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7307.21-0000	
	50	-- 기타			
7307.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벤드(bend), 슬리브(sleeve)			
	10	-- 슬리브(커플링)		7307.22-1000	
	50	-- 기타		7307.22-9000	
7307.23	00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7307.23-0000	
7307.29	00	- 기타		7307.29-0000	
7307.9		기타			
7307.91		- 플랜지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7307.91-0000	
	3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50	-- 기타			
7307.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벤드(bend), 슬리브(sleeve)			
	30	-- 슬리브(커플링)		7307.92-1000	
	90	-- 기타		7307.92-9000	
7307.93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 내경 360mm 미만의 것			
	3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7307.93-0000	
	6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90	-- 내경 360mm 이상의 것			
7307.99		- 기타			
		-- 단조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			
	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ex	7307.99-9000	
	30	--- 합금강의 것(스테인리스강 제외)	ex	7307.99-9000	
	50	-- 기타	ex	7307.99-1000	
			ex	7307.99-9000	

제7307호에는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서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철강제 관 연결구류(fittings)가 분류된다. 포고문 상으로는 비가단 주철로 주조한 것을 제외한 모든 관 연결구류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08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 <후략>			
7308.10	00	다리와 교량		7308.10-0000	
7308.20	00	탑과 격자주(格子柱)		7308.20-0000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 스테인리스강의 것		7308.30-0000	
	50	- 기타			
7308.40	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궤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7308.40-0000	
7308.90		기타			
		- 기둥, 포스트, 빔, 거더 및 유사한 구조물 유닛			
	30	-- 합금강의 부분품이 아닌 것	ex	7308.90-9000	
	60	-- 기타	ex	7308.90-9000	
		- 기타			
	70	-- 강제 격자	ex	7308.90-9000	
	95	-- 기타	ex	7308.90-1000 7308.90-9000	

제7308호에는 철강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구조물은 통상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보통 봉, 형강, 쉬트, 프로파일, 관 등의 재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통상 제73류의 물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관적이라 할 수 있다. 제7308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09호부터 제7311호의 철강제 용기(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09.00	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 하고 ... <중략> ...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 <후략>)	7309.00-0000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 하고 ... <중략> ...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 으로 한정하며 ... <후략>)		
7310.10	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7310.10-0000	
7310.2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7310.21	00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7310.21-0000	
7310.29	00	- 기타	7310.29-0000	
7311.00	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철강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용기(container)가 분류된다. 그 저장 용량에 따라 300리터 이상의 대형 용기는 제7309호에, 300리터 이하의 중소형 용기는 제7310호에 분류되며, 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 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 이들 3개 호에 포함되는 모든 용기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12호부터 제7314호의 철강제의 선 및 그 제품(수입조정 대상 3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로프, 케이 블, 엮은 밴드,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 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 연선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5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1011	○
	10	--- 기타	7312.10-1019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 기타			
	2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1091	○
	30	--- 기타		7312.10-1092 7312.10-1099	○
		- 로프, 케이블 및 연선 이외의 밧줄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5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2011	○
	60	--- 기타		7312.10-2019	○
		-- 기타			
	7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7312.10-2091	○
		--- 기타			
	80	---- 황동 도금된 것	ex ex	7312.10-2092 7312.10-2099	○
	90	---- 기타	ex ex	7312.10-2092 7312.10-2099	○
7312.90	00	기타		7312.90-0000	○
7313.00	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 대, 평선을 끈 것 [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끈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1000 7313.00-9000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 (endless band)를 포함한다], 그릴, 망,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1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 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2-0000	
	2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 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고 36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2-000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 미터당 와이어 36개를 넘는 것			
		--- 제지기계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초기지 와이어			
	30	---- 센티미터당 와이어가 94개 이상의 것	ex	7314.12-0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60	---- 기타	ex	7314.12-0000	
	90	--- 기타	ex	7314.12-0000	
7314.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4-0000	
	2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12개를 넘고 36개를 넘지 않는 것	ex	7314.14-0000	
		-- 그물코의 촘촘함이 경사와 위사 모두 센티미터당 와이어 36개를 넘는 것			
		--- 제지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초기지 와이어			
	30	---- 센티미터당 와이어가 94개 이상의 것	ex	7314.14-0000	
	60	---- 기타	ex	7314.14-0000	
	90	--- 기타	ex	7314.14-0000	
7314.19	01	- 기타		7314.19-0000	
7314.20	00	그릴, 망,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314.20-0000	
7314.3		그 밖의 그릴, 망,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 선으로 만든 울타리(플라스틱 재료로 도포된 것인지 여부 불문)		7314.31-0000	
	50	-- 기타			
7314.39	00	- 기타		7314.39-0000	
7314.4		그 밖의 클로스(cloth), 그릴, 망, 울타리			
7314.41	00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314.41-0000	
7314.42	00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7314.42-0000	
7314.49		- 기타			
	30	-- 재단하지 않은 것		7314.49-0000	
	60	-- 재단한 것			
7314.50	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50-0000	

철강제의 봉(bar and rod)과 철강제의 선(wire)은 전 길이를 통해 중공이 없고 횡단면이 균일한 형태의 기다란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관적으로 선은 봉에 비해 두께나 직경이 가늘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봉과 선의 차이에 대해 제72류에서는 선은 코일상(in coil)으로 감기는 냉간 성형제품¹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73류에서는 직경 16mm 이하의 제품¹⁵⁾을 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선(single wire) 형태로 제시되는 철강제의 선은 제72류(제7217호 등)에 분류되며, 단선을 2개 이상 꼬아서 만든 연선이나 로프, 케이블은 제7312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이를 철조망 형태로 제조한 물품은 제7313호에, 제11부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공한 것은 제7314호에 분류된다. 제7312호에서 제7314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다만 제7312호 물품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면 수입조정 조치에서 제외된다.

□ 제7315호 및 제7316호(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00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1-0000	
7315.12	00	그 밖의 체인		7315.12-0000	
7315.19	00	- 부분품		7315.19-0000	
7315.20		스키드체인			
	10	직경 8mm를 넘지 않는 것		7315.20-0000	
	50	직경 8mm를 넘는 것			
7315.8		기타 체인			
7315.81	00	스터드 링크		7315.81-0000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 합금강의 것			
	10	--- 직경 10mm를 넘지 않는 것	ex	7315.82-0000	

14) 제72류 주 제1호 하목

하. 선(線):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5) 제73류 주 제2호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0	--- 직경 10mm를 넘는 것	ex	7315.82-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것			
	50	--- 직경 10mm를 넘지 않는 것	ex	7315.82-0000	
	70	--- 직경 10mm를 넘는 것	ex	7315.82-0000	
7315.89		- 기타			
		-- 횡단면이 본질적으로 원형인 링크의 것			
	10	--- 직경 8mm를 넘지 않는 것		7315.89-0000	
	30	--- 직경 8mm를 넘는 것			
	50	-- 기타			
7315.90	00	기타의 부분품		7315.90-0000	
7316.00	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6.00-1000 7316.00-2000	

제7315호에 분류되는 모든 철강제 체인과 제7316호의 닻과 그 부분품 또한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범용성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2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 압정, 제도용 핀, 물결 모양 못,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10	- 엄지 압정(thumb tack)	ex	7317.00-2000	
		- 기타, 동력구동식(power actuated) ¹⁶⁾ 수공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			
	20	-- 나선가공하지 않은 것	ex ex ex ex ex ex ex	7317.00-1011 7317.00-1019 7317.00-1021 7317.00-1029 7317.00-2000 7317.00-4000 7317.00-5000	
	30	-- 나선가공한 것	ex ex	7317.00-1011 7317.00-1019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ex ex ex ex	7317.00-1021 7317.00-1029 7317.00-2000 7317.00-4000 7317.00-5000	
		- 기타			
		-- 한 조각으로 구성된 것			
	55	--- 둥근 와이어로 제조한 것	ex ex	7317.00-1011 7317.00-1019	
	65	--- 기타	ex ex ex ex ex ex	7317.00-1011 7317.00-1019 7317.00-2000 7317.00-3000 7317.00-4000 7317.00-5000	
	75 00	-- 두 조각 이상으로 구성된 것	ex ex	7317.00-1021 7317.00-1029	
7318.0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스크루 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00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7318.11-0000	
7318.12	00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7318.12-0000	
7318.13	00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7318.13-0000	
7318.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1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미만인 것		7318.14-0000	
	5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이상인 것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20	-- 볼트 및 볼트와 너트 또는 와셔가 함께 선적되어 제시되는 것		7318.15-2000 7318.15-3000	
	40	-- 길이 9.5mm 이상 직경 3.2mm 이상인 것 (캡 스크루 제외)	ex ex	7318.15-1000 7318.15-9000	
	50	-- 스테드	ex	7318.15-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 기타			
	6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미만인 것	ex ex	7318.15-1000 7318.15-9000	
	80	--- 몸통 또는 나선가공 부분의 직경이 6mm 이상인 것	ex ex	7318.15-1000 7318.15-9000	
7318.16	00	- 너트		7318.16-0000	
7318.19	00	- 기타		7318.19-0000	
7318.2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00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7318.21-0000	
7318.22	00	- 그 밖의 와셔		7318.22-0000	
7318.23	00	- 리벳		7318.23-0000	
7318.24	00	- 코터와 코터핀		7318.24-0000	
7318.29	00	- 기타		7318.29-0000	

제7317호와 제7318호의 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범용성 부분품¹⁷⁾이다.

제7318호의 볼트(bolt)와 너트(nut), 스크루(screw) 등은 통상 완성 상태에서는 나선이 파여 있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 데 사용한다. 볼트나 스크루는 너트나 와셔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7318.15호에는 볼트나 스크루만 제시되거나 이들이 너트와 함께 제시될 경우(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r washers)를 모두 포함¹⁸⁾하고 있다.

즉, 너트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7318.16호에 분류되는 반면, 볼트에 (일대일로) 부착 또는 부가돼 제시되는 너트는 볼트와 함께 제7318.15호에 분류된다는 의미다.

16) HTSUS에서 품명(Article Description)상으로는 'powder-actuated'라고 기술돼 있으나 오타로 보인다.

17)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18) 소호 제7318.15호의 용어: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너트나 와셔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Other screws and bolts, whether or not with their nuts or washers)

다만 10단위 체계에서 미국 HTSUS와 우리나라 HSK가 이에 대해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HTSUS에서는 ‘너트나 와셔와 같은 선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볼트’라고 규정하는 반면, HSK는 ‘볼트, 너트(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소호 용어로 보자면 HTSUS가 HSK보다 넓게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통관단계에서 볼트와 너트가 함께 제시되는 조합의 형태에 따라 10단위 품목분류의 해석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볼트와 너트가 함께 제시된 물품의 품목분류 ●

HTSUS		HSK	
Subheading	Article Description	품목번호	품명
7318.15.20	Bolts and bolt and their nuts or washer entered or exported in the same shipment.	7318.15-3000	볼트, 너트 (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7317호와 제7318호에 해당하는 모든 범용성 부분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19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수편침, 돛바늘, 코바늘,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20	- 안전핀		7319.40-1000	
	30	- 재단사용 또는 보통의 핀	ex	7319.40-9000	
	50	- 기타	ex	7319.40-2000 7319.40-9000	
7319.90		기타			
	10	- 바느질용, 짜깁기용 또는 자수용 바늘	ex	7319.90-1010 7319.90-1090 7319.90-9000	
	90	- 기타	ex	7319.90-1020 7319.90-9000	

제7319호에는 바느질, 뜨개질, 자수, 직물이나 양탄자 제조, 가죽공예 등에 사용되는 모든 철강제 바늘(needle)과 핀(pin)이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이다.

다만 HSK 품명에서 영문 표현상의 모호한 부분이 하나 있다. 제7319호 호의 용어에서 영문의 ‘Knitting needle’을 관세율표에서는 ‘수편침(뜨개질 바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HSK 제7319.90-1020호에서는 국문 품명 ‘수편침’의 영문 품명을 ‘Darning needle’로 표현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영문 품명의 오역으로 보인다.

‘Darning’은 직물의 해지거나 구멍 뚫린 부분을 기워내는 작업을 의미하므로 이는 (뜨개질이 아닌) 바느질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HTSUS에서는 제7319.90.1000호에서 ‘Sewing, darning or embroidery needles’를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 Darning(짜맴) 작업과 그 바늘(좌) & 수편침뜨개질(Knitting) 바늘(우) ●



‘Darning needle’의 품목분류에서 HSK 10단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HSK 용어는 국문이 영문에 우선한다. 따라서 HSK 제7319.90-1020호에는 ‘Darning needle’이 아닌 ‘뜨개바늘(Knitting needle)’이 분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7320호(수입조정 대상 7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30	-- 총중량(GVW) 4톤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	ex	7320.10-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60	-- 기타	ex	7320.10-1000	
	90	- 기타	ex ex ex	7320.10-1000 7320.10-2000 7320.10-9000	
7320.20		나선형 스프링			
	10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ex	7320.20-1000	
	50	- 기타	ex ex ex ex ex	7320.20-1000 7320.20-2000 7320.20-3000 7320.20-4000 7320.20-9000	
7320.90		기타			
	10	- 헤어스프링(hairspring)	ex	7320.90-9000	
	50	- 기타	ex ex	7320.90-1000 7320.90-9000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선(wire)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며 상당히 끌어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이 있는 범용성 부분품을 말한다.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스프링은 크게 판상 스프링과 나선형 스프링으로 나뉜다. 자동차에서 스프링은 보통 서스펜션과 같은 완충장치용으로 사용되지만 서스펜션 이외에도 밸브, 클러치, 브레이크, 시트(seat)나 도어 및 후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HTSUS에서는 ‘자동차 서스펜션용’의 스프링을 별도로 계기하고 있으며, HSK는 ‘자동차용’과 ‘충격흡수용’을 같은 레벨에서 세분하고 있다.

제7320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21호(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레인지(range), 불판,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0	-- 휴대용의 것	ex	7321.11-0000	
		-- 기타			
	30	--- 스토브나 레인지	ex	7321.11-0000	
	60	--- 기타	ex	7321.11-0000	
7321.12	00	- 액체연료용		7321.12-0000	
7321.19	00	- 기타(고체연료용 포함)		7321.19-0000	
7321.8		그 밖의 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0	-- 휴대용의 것		7321.81-0000	
	50	-- 기타			
7321.82		- 액체연료용			
	10	-- 휴대용의 것		7321.82-0000	
	50	-- 기타			
7321.89	00	- 기타(고체연료용 포함)		7321.89-0000	
7321.90		부분품			
		- 제7321.11.30호의 것			
	10	-- 조리용 챔버(조립된 것인지 여부 불문)		7321.90-0000	
	20	-- Top surface panel(버너나 조절기 포함 여부 불문)			
	40	-- 도어 어셈블리(내부 패널, 외부 패널, 창문, 절연체 중 하나 이상을 결합한 것)			
	50	-- 기타			
	60	- 기타			

제7321호에는 보통 가정용이나 캠핑용의 레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는 철강제 기기가 분류된다. 제7321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322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 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9	00	- 기타(주철로 만든 것 제외)	7322.19-1000 7322.19-2000	
7322.90	00	기타	7322.90-9010 7322.90-9020 7322.90-9030	○

제732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포고문은 제7322호에서 소호 제7322.11호의 주철(cast iron)로 만든 방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제7322.90호에 해당하는 공기가열기나 온풍배분기의 경우 항공기용이면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철이란 주조 방식으로 만든 철강제품¹⁹⁾을 말한다. 주조는 금속을 녹여 원하는 형태의 틀(몰드)에 부은 다음 식혀서 고체화하는 공정을 말한다. 제7307호의 비가단주철로 주조한 연결구류를 포함해 포고문에서는 주철제 물품을 대체로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제7323호 및 제7324호(수입조정 대상 1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율,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9) 제72류 주 제1호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 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3.10	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 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0000	
7323.9		기타			
<생략>					
7323.93	00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323.93-0000	
7323.94	00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 의 것		7323.94-0000	
7323.99		- 기타			
		-- 귀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된 것			
	10	--- 은으로 도포 또는 도금된 것	ex	7323.99-0000	
	30	--- 기타	ex	7323.99-0000	
		-- 귀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되지 않은 것			
	50	--- 주석도금된 것	ex	7323.99-0000	
		--- 기타			
	70	---- 조리기구	ex	7323.99-0000	
	90	---- 기타	ex	7323.99-0000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00 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 로 한정한다)		7324.10-1000 7324.10-2000	○
7324.2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			
<생략>					
7324.29	00 00	기타		7324.29-1000 7324.29-9000	
7324.90	00 00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7324.90-1000 7324.90-8000 7324.90-9000	○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이 분류되며,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이 분류된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고문에서는 이들 호에서 주철로 만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제7325호(수입조정 대상 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5		철강제의 주물 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생략>				
7325.9		기타		
7325.91	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5.91-0000	
7325.99		- 기타		
	10	-- 주철의 것	7325.99-1000	
	50	-- 기타	7325.99-2000 7325.99-3000 7325.99-9000	

제7325호에는 제73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all cast article)을 포함한다. 포고문은 제7325호에서 비가단주철을 제외한 가단주철로 만든 물품에 한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단주철(malleable cast iron)이란 탄소 함량이 높은 주철에 적당한 열을 가해 가단성(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가단주철은 내충격성과 인장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적합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부품 및 장비의 제조에 사용된다. 포고문은 제73류에서 가단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7326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1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00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7326.11-0000	
7326.19	00	- 기타	7326.19-0000	
7326.20	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7326.20-000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326.90		기타			
	10	- 주석도금한 것	ex ex	7326.90-1000 7326.90-9000	
		- 기타			
	25	-- 캘리퍼 브레이크나 캔틸레버 브레이크용의 케이블 또는 내부 와이어	ex	7326.90-9000	
	35	--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기 적합한 용기	ex	7326.90-9000	
	45	-- 말발굽과 당나귀발굽	ex	7326.90-9000	
		-- 기타			
	60	--- 귀금속으로 도포나 도금된 것	ex	7326.90-9000	
	86	--- 기타	ex	7326.90-9000	

제7326호에는 제73류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제품으로 단조, 편칭, 절단, 스탬핑, 조립, 용접, 밀링 등 그 밖의 공정에 의해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제7326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3. 미 수입조정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 10896은 제72류와 제73류 이외에 철강 재료로 만든 다른 류의 제품, 특히 기계류의 부분품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HTSUS 8단위 코드 기준으로 12개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물품은 전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철강의 비중에 따라 수입조정 조치에 따른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포고문 10947 부속서(ANNEX II)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u) The rate of duty in heading 9903.81.98 apply to all imported derivative iron and steel products that are classified in the following subheadings of the HTSUS ... <중략> ... : 8431.31.00, 8431.42.00, 8431.49.90, 8431.49.90, 8432.10.00, 8432.90.00, 8547.90.00, 9403.20.00, 9405.99.20, 9405.99.40, 9406.20.00, 9406.90.01.

For any derivative steel article that is classified one of the subheadings of the HTSUS that is listed in the subdivision, **the additional as valorem duty** imposed by heading 9903.81.98 shall **only apply to the declared value of the steel content** of the derivative articles. The quantity of the steel content shall be reported in kg ... <후략>

포고문 10896에서는 HS 제8431호, 제8432호, 제8547호, 제9403호, 제9405호 및 제9406호 등 6개 호에 포함되는 12개 품목만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공고에서는 추가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파생제품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초 포고문에서 규정한 물품과 같이 제72류나 제73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철강을 포함한 비금속 재료를 주로 해서 만드는 제품, 장치, 기계류 또는 그 부분품 종류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HS 제15부 이후에 분류된다. 공고문에는 제82류부터 제87류까지, 그리고 제94류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 특성상 철강 재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84류(기계류)에 해당 품목이 가장 많다.

둘째는 철강제 포장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밀크, 조제식료품, 유기·무기화합물, 화장품, 페인트 등은 유통 과정에서 철강제의 캔이나 드럼, 탱크 등의 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철강제 및 철강제품 자체에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해외 수출업체는 철강제 원자재를 이용해 용기를 제조하거나 타국에서 수입한 후 그 안에 다른 물품을 채워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우회 수입이 미국 철강산업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철강제 용기를 사용하는 품목군 전체를 감시망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포고문과 추가 공고에 포함된 철강 파생제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철강제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및 산물(수입조정 대상 8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0402.99	68	그 밖의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7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0402.99	90		ex	0402.99-1000	
			ex	0402.99-9000	
2106.90	99	그 밖의 조제식료품	ex	2106.90-1010	
			ex	2106.90-1020	
			ex	2106.90-1090	
			ex	2106.90-2000	
			ex	2106.90-3011	
			ex	2106.90-3019	
			ex	2106.90-3021	
			ex	2106.90-3029	
			ex	2106.90-901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ex ex ex ex ex ex ex ex ex	2106.90-9021 2106.90-9022 2106.90-9023 2106.90-9030 2106.90-9040 2106.90-9050 2106.90-9060 2106.90-9070 2106.90-9091 2106.90-9099	
2710.19	30	50	그 밖의 석유와 역청유(steam cylinder oil)		ex	2710.19-7210	
2711.12	00	20	액화 프로판 가스(순도 90% 이상)		ex	2711.12-0000	
2804.29	00	10	헬륨 가스			2804.29-1000	
2804.40	00	00	산소			2804.40-0000	
2901.22	00	0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2903.42	10	00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디플루오로메탄(HFC-32)		2903.42-0000	
2903.43	10			플 루 오 로 메 탄 (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2903.43-0000	
2903.44	10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2903.44-0000	
2903.45	1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2903.45-0000	
2903.49	00			기타[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제외]		2903.49-1000 2903.49-9000	
2903.51	10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1-0000	
2903.59	90		그 밖의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9-0000	
2903.71	01	00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2903.7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004.90	92	44	기타 의약품(피부과적 약제와 국소마취제)		ex	3004.90-9900	
3208.10	00		비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폴리에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10-1010 3208.10-1090 3208.10-2000 3208.10-3000	
3208.20	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1011 3208.20-1019 3208.20-1020 3208.20-1030 3208.20-2011 3208.20-2019 3208.20-2020 3208.20-2030	
3208.90	00			기타		3208.90-1011 3208.90-1019 3208.90-1020 3208.90-1030 3208.90-9011 3208.90-9019 3208.90-9020 3208.90-9030	
3209.10	00		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9.10-1011 3209.10-1019 3209.10-1020 3209.10-2010 3209.10-2020	
3209.90	00			기타		3209.90-1011 3209.90-1019 3209.90-1020 3209.90-9011 3209.90-9019 3209.90-9020	
3213.90	00		세트 상태가 아닌 화가용 물감 등			3213.90-1000 3213.90-2000 3213.90-9000	
3214.10	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10-1060 3214.10-1080 3214.10-1090 3214.10-2000 3214.10-9000	
3303.0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향수와 화장수	플로럴 워터		3303.00-1000 3303.00-2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303.00	20		기타			
3303.00	30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와 화장수				
3304.30	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 품류		3304.30-1000 3304.30-9000		
3304.99	50	그 밖의 화장품		3304.99-1000 3304.99-2000 3304.99-3000 3304.99-9000		
3305.10	00	두발용 제품류	샴푸	3305.10-0000		
3305.30	00		헤어 래커(hair lacquer)	3305.30-0000		
3305.90	00		기타	3305.90-1000 3305.90-2000 3305.90-9000		
3306.90	00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약과 치실 제외)		3306.90-1000 3306.90-2000		
3307.10	10	면도용 제품류	알코올 비함유	3307.10-1000 3307.10-9000		
3307.10	20		알코올 함유			
3307.20	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20-0000		
3307.49	00	그 밖의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00		
3307.90	00	그 밖의 화장용품		3307.90-1000 3307.90-3000 3307.90-4000 3307.90-9000		
3401.30	1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제제품과 조제품	방향 성분 함유	3401.30-0000		
3401.30	50		기타			
3402.31	9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방향 성분 비함유)		ex 3402.31-0000		
3402.49	90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방향 성분 비함유)		ex 3402.49-0000		
3402.50	11	소매포장된 조제세제 등	방향 성분 함유	3402.50-1000 3402.50-2000 3402.50-9000		
3402.50	51		방향 성분 비함유			
3402.90	10	그 밖의 조제세제 등	합성세제	3402.90-1000 3402.90-2000 3402.90-3000		
3402.90	30		기타(방향 성분 함유)			
3402.90	50		기타(방향 성분 비함유)			
3403.19	1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 한 조제윤활유(방직용)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 량이 50% 이상	3403.19-1000 3403.19-3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403.19	50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기타		3403.19-4000 3403.19-5000 3403.19-9000	
3403.99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3403.99-1000 3403.99-2000 3403.99-9000	
3405.10	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10-0000	
3405.20	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20-0000	
3405.40	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5.40-0000	
3405.90	00	그 밖의 광택제(차체 광택제 제외)			3405.90-1030 3405.90-1090 3405.90-9000	
3506.10	50	순중량 1kg 이하로 소매포장된 글루(동물성 글루와 카제인 글루 제외)		ex ex ex	3506.10-1000 3506.10-2000 3506.10-9000	
3506.91	1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 디스플레이 또는 터치패널 제조용)		3506.91-1000	
3506.91	50		기타		3506.91-9000	
3506.99	00	그 밖의 접착제			3506.99-1000 3506.99-9000	
3808.5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59	40		살균제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61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1-1000 3808.61-9000	
3808.61	50		기타			
3808.62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7.5킬로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2-1000 3808.62-9000	
3808.62	50		기타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808.6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 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 한 것		3808.69-1000 3808.69-9000	
3808.69	50			기타			
3808.91	15		살충제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 한 것	ex ex	3808.91-1000 3808.91-9000	
3808.91	25				ex ex	3808.91-1000 3808.91-9000	
3808.91	30			무기원료를 함유한 것	ex ex	3808.91-1000 3808.91-9000	
3808.91	50			기타	ex ex	3808.91-1000 3808.91-9000	
3808.94	10		소독제	방향성 소독제를 함유 한 것		3808.94-0000	
3808.94	50			기타			
3809.91	00		섬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가공제 등			3809.91-0000	
3810.10	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등			3810.10-1000 3810.10-9000	
3811.19	00		안티녹(anti-knock)제(납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이외의 것)			3811.19-0000	
3811.21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는 윤활유 첨가제			3811.21-0000	
3814.00	10		유기혼합용제	5~25퍼센트의 방향 성 분 함유		3814.00-1020 3814.00-1030 3814.00-1090 3814.00-2110 3814.00-2190 3814.00-2910 3814.00-2990	
3814.00	20			25퍼센트 이상 방향 성 분 함유			
3814.00	50			기타			
3820.00	00		부동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1000 3820.00-2000	
3824.99	93	97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		ex ex ex ex ex ex ex ex ex ex	3824.99-1000 3824.99-2100 3824.99-2210 3824-99-2290 3824.99-2900 3824.99-3100 3824.99-3910 3824.99-3990 3824.99-4100 3824.99-42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3824.99-4300	
			ex	3824.99-4400	
			ex	3824.99-5100	
			ex	3824.99-5200	
			ex	3824.99-5300	
			ex	3824.99-6100	
			ex	3824.99-6200	
			ex	3824.99-6300	
			ex	3824.99-6400	
			ex	3824.99-6500	
			ex	3824.99-6600	
			ex	3824.99-7100	
			ex	3824.99-7200	
			ex	3824.99-7300	
			ex	3824.99-7400	
			ex	3824.99-7500	
			ex	3824.99-7600	
			ex	3824.99-7700	
			ex	3824.99-8000	
			ex	3824.99-9010	
			ex	3824.99-9020	
			ex	3824.99-9030	
			ex	3824.99-9040	
			ex	3824.99-9052	
			ex	3824.99-9053	
			ex	3824.99-9059	
			ex	3824.99-9090	
3827.61	00	00		3827.61-0000	
3827.62	00	00		3827.62-0000	
3827.63	00	00		3827.63-0000	
3827.64	00	00		3827.64-0000	
3827.65	00	00		3827.65-0000	
3925.20	00			3925.20-0000	
3926.90	10		ex	3926.90-9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은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철강제 용기에 수용된 채로 거래되는 경우 그 철강의 비중에 따른 추가관세가 포함되며, 철강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에 계기된 세율이나 상호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그룹에는 대체로 철강제 용기를 포함해 견고한 포장을 사용하기 적합한 소매용 물품이 포함된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물품은 HTSUS 제2106.90.9998호의 ‘그 밖의 조제 식료품’과 제3824.99.9397호의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이다. HS 품목분류표 관점에서 소호 제2106.90호는 제21류의 잔여 소호이므로 그 자체로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또한 이 소호에서 미국 HTSUS의 세분류 체계와 한국 HSK의 세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품목코드 간 일대일 매칭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2106.90호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HSK 코드 전체가 HTSUS 제2106.90.9998호와 연계되고 있으나 실제로 수입조정 대상이 되는 품목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국 HTSUS 세분류 코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제3824.99호에서도 동일하다.

□ 그 밖의 철강재료를 사용한 제품, 기구, 기계류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32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4.10	10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7614.10-0000	
8202.39	00	40	원형톱날(다이아몬드 톱날 코어)		ex	8202.39-9000	
8203.40	60		파이프커터, 볼트크로퍼, 천공펀치(기타)		ex ex ex ex	8203.40-1000 8203.40-2000 8203.40-3000 8203.40-9000	
8205.59	55		그 밖의 수공구		ex ex ex	8205.59-1000 8205.59-3000 8205.59-9000	
8205.70	00		바이스,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것			8205.70-1000 8205.70-2000 8205.70-9000	
8207.20	00	70	압출용, 인발용 다이(부분품)		ex ex	8207.20-1000 8207.20-2000	
8207.30	60	62	프레스, 스탬핑, 펀칭	메탈 성형용 다이	ex	8207.30-0000	
8207.30	60	95	공구	부분품	ex	8207.30-0000	
8211.10	00		칼 세트			8211.10-0000	
8211.91	1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1.91-0000	
8211.91	20						
8211.91	25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211.91	30				
8211.91	40				
8211.91	50				
8211.91	80				
8211.92	2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211.92-0000	
8211.92	40				
8211.92	60				
8211.92	90				
8211.93	00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		8211.93-0000	
8211.94	10	칼날		8211.94-0000	
8211.94	50				
8211.95	10	비금속으로 만든 손잡이		8211.95-0000	
8211.95	50				
8211.95	90				
8215.10	00	스푼 등의 세트(귀금속 도금)		8215.10-0000	
8215.20	00	스푼 등의 세트(기타)		8215.20-0000	
8215.91	30	스푼, 포크, 국자 등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215.91-0000	
8215.91	60				
8215.91	90				
8215.99	01		포크	8215.99-2000	
8215.99	05				
8215.99	10				
8215.99	15				
8215.99	20				
8215.99	22				
8215.99	24				
8215.99	26				
8215.99	30	스푼과 국자	ex	8215.99-1000 8215.99-3000	
8215.99	35				
8215.99	40				
8215.99	45		ex	8215.99-3000	
8215.99	5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215.99-5000 8215.99-9000		
8302.10	60		힌지[hinge(경첩)](자동차용 제외)		ex	8302.10-0000	○	
8302.41	30		건물용으로 적합한 부착구	도어클로저	ex ex	8302.41-1000 8302.41-9000		
8302.41	60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ex ex	8302.41-1000 8302.41-9000		
8302.42	30		가구용에 적합한 부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 의 것)		ex	8302.42-0000	○	
8302.49	60		기타의 부착구(철강, 알루미늄, 아연의 것)		ex ex	8302.49-1000 8302.49-9000	○	
8305.20	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305.20-0000		
8307.10	60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를 부착 하지 않은 것)		ex	8307.10-0000		
8401.40	00	00	원자로 부분품			8401.40-0000		
8403.10	00		중앙난방용 보일러			8403.10-1000 8403.10-3000 8403.10-9000		
8406.90	40	00	증기터빈 부분품(블레이드, 고정자 및 회전자)		ex ex	8406.90-1000 8406.90-9000		
8407.21	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아웃보드 모터)			8407.21-0000		
8407.90	10		그 밖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농업기계용		8407.90-9000		
8407.90	90			기타		8407.90-1000 8407.90-9000		
8408.20	10		제87류 차량용 디젤엔진(농업용 트랙터용)			8408.20-1000		
8408.20	90		제87류 차량용 디젤엔진(기타)			8408.20-2000 8408.20-3000 8408.20-4000 8408.20-5000		
8409.91	50		불꽃점화식 엔진 부분 품	로드 트랙터, 버스, 승 용차, 화물차용		ex		8409.91-1000
8409.91	92			선박 추진용		ex ex		8409.91-2000 8409.91-9000
8409.91	99			기타	ex	8409.91-9000		
8409.99	91		압축점화식 엔진 부분 품	로드 트랙터, 버스, 승 용차, 화물차용	ex	8409.99-7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09.99	92			선박 추진용	ex ex ex	8409.99-8010 8409.99-8020 8409.99-8030	
8409.99	99			기타	ex ex ex ex ex ex ex	8409.99-4010 8409.99-4090 8409.99-5000 8409.99-6000 8409.99-7000 8409.99-9000	
8410.90	00	00	수력터빈 등의 부분품			8410.90-1010 8410.90-1090 8410.90-9010 8410.90-9090	
8411.81	80		출력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항공기 용 제외)			8411.81-9010 8411.81-9090	
8412.21	00		유압엔진	리니어액팅식		8412.21-1000 8412.21-9000	○
8412.29	80			기타(선박용 하이드로 젯 제외)	ex	8412.29-0000	○
8412.90	90	70	부분품	풍력터빈 블레이드	ex	8412.90-9000	
8412.90	90	75		풍력터빈 허브	ex	8412.90-9000	
8413.81	00		그 밖의 펌프			8413.81-1000 8413.81-2000 8413.81-9000	○
8413.91	90	55	유체 파워 펌프의 부분품		ex ex ex ex ex ex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
8413.91	90	60			ex ex ex ex ex ex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
8413.91	90	96	그 밖의 부분품		ex ex ex ex ex ex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
8414.30	40		냉동설비용 기체압축기(1/4마력 이하)		ex	8414.30-1000	○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14.80	16		그 밖의 기체압축기(터보차저 제외)		ex ex ex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
8414.90	30		압축기 부분품	제8414.40호 물품의 고정자와 회전자	ex	8414.90-9010	○
8414.90	41			기타	ex ex ex	8414.90-9010 8414.90-9020 8414.90-9090	○
8415.10	3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 된 공기조절기			8415.10-1010	
8415.10	60					8415.10-1020 8415.10-2010	
8415.10	90					8415.10-2020 8415.10-9010 8415.10-9020	○
8415.81	01		냉각유닛과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8415.81-0000	○
8415.82	01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			8415.82-0000	○
8415.83	00		기타의 공기조절기			8415.83-0000	○
8415.90	40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8415.90-0000	○
8415.90	80						
8417.90	00	00	노와 오븐의 부분품			8417.90-0000	
8418.10	00		일체형 냉장 냉동고			8418.10-1010 8418.10-1020 8418.10-1030 8418.10-9000	○
8418.21	00		압축식 가정형 냉장고			8418.21-1000 8418.21-2000 8418.21-3000	
8418.29	20		그 밖의 냉장고(전기식의 흡수식 제외)			8418.29-9000	
8418.30	00		체스트형 냉동고			8418.30-0000	○
8418.40	00		직립형 냉동고			8418.40-0000	○
8418.99	40		냉장기구의 부분품(도어 어셈블리)		ex ex	8418.99-1000 8418.99-9000	
8419.81	50		쿠킹 스토브, 레인지와 오븐		ex	8419.81-0000	○
8421.29	00		그 밖의 액체 여과기			8421.29-1000 8421.29-2010 8421.29-209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21.29-3010 8421.29-3090 8421.29-4000 8421.29-9010 8421.29-9090	
8422.11	00	가정형 접시세척기	8422.11-0000	
8424.10	00 00	소화기	8424.10-0000	○
8424.89	90	그 밖의 분사, 분무용 기기	8424.89-1000 8424.89-9000	
8425.42	00	그 밖의 잭과 호이스트	8425.42-1000 8425.42-2000	○
8426.20	00	타워크레인	8426.20-0000	
8426.99	00	그 밖의 크레인	8426.99-1000 8426.99-9000	○
8427.10	4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8427.10-1010 8427.10-1020 8427.10-2010 8427.10-2020 8427.10-3000	
8427.10	80			
8427.20	40	그 밖의 자주식 작업트럭	8427.20-1011 8427.20-1012 8427.20-1021 8427.20-1022 8427.20-9000	
8427.20	80			
8427.90	00	그 밖의 작업트럭	8427.90-1000 8427.90-9000	
8428.32	00	버킷형 컨베이어	8428.32-0000	
8428.33	00	벨트형 컨베이어	8428.33-1010 8428.33-1020 8428.33-2000	○
8428.39	00	기타 컨베이어	8428.39-0000	○
8428.60	00	텔레페릭	8428.60-0000	
8428.70	00	산업용 로봇	8428.70-1000 8428.70-2000 8428.70-9000	
8428.90	03	그 밖의 권양, 하역, 양하, 적하용 기계	8428.90-1000 8428.90-2000 8428.90-3000	○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28.90-9000	
8429.11	00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1000 8429.11-2000		
8429.19	00				8429.19-0000		
8429.20	00	그레이더, 레벨러			8429.20-0000		
8429.30	00	스크레이퍼			8429.30-0000		
8429.40	00	탐핑머신			8429.40-1000 8429.40-2000		
8429.51	10	메커니컬, 셔블, 엑스카베이터, 셔블로더	셔블로더		8429.51-1011 8429.51-1012 8429.51-1021 8429.51-1022 8429.51-1031 8429.51-1032 8429.51-1091 8429.51-1092 8429.51-9000		
8429.51	50						
8429.52	10		360도 회전 상부구조 를 가진 것		8429.52-1011 8429.52-1012 8429.52-1021 8429.52-1022 8429.52-1090 8429.52-9000		
8429.52	50						
8429.59	10		기타		8429.59-0000		
8429.59	50						
8431.20	00	제8427호 기계의 부분품			8431.20-0000		
8431.31	00	제8428호 기계의 부분품			8431.31-0000		
8431.39	00				8431.39-0000		
8431.41	00	제8426호, 제8429호, 제8430호 기계의 부 분품			8431.41-1000 8431.41-9000		
8431.42	00				8431.42-0000		
8431.43	40				8431.43-0000		
8431.43	80						
8431.49	10				8431.49-1000 8431.49-2000 8431.49-9000		
8431.49	90						
8432.10	00	플라우(쟁기)			8432.1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32.90	00		제8432호 기계의 부분품				8432.90-1000 8432.90-2000 8432.90-9000	
8433.11	00		잔디깎기				8433.11-0000	
8433.20	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				8433.20-0000	
8433.51	00		수확, 탈곡 겸용기				8433.51-0000	
8433.59	00		그 밖의 수확기				8433.59-0000	
8433.90	10		제8433호 기계의 부분품				8433.90-1000	
8433.90	50						8433.90-2000 8433.90-9000	
8443.16	00	00	곡면 인쇄용 기계				8443.16-0000	
8450.11	00		완전자동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이하)				8450-11-0000	
8450.20	00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초과)				8450-20-0000	
8451.21	00		건조기				8451.21-0000	
8451.29	00						8451.29-0000	
8454.20	00	10	잉곳용 주형	철강 잉곳용	ex	8454.20-0000		
8454.20	00	60		기타	ex	8454.20-0000		
8455.30	00		압력주조기				8455.30-1000 8455.30-2000 8455.30-9000	
8455.90	40	00	제8455호 기계용의 부분품				8455.90-0000	
8455.90	80	00						
8457.10	00		머시닝 센터				8457.10-4000 8457.10-9010 8457.10-9020 8457.10-9030 8457.10-9090	
8474.90	00		제8474호 기계의 부분품				8474.90-0000	
8477.10	30		사출성형기				8477.10-1000	
8477.10	40						8477.10-2000	
8477.10	90							
8477.90	25		제8477호 기계의 부분품	베이스 베드, ram 등	ex	8477.90-0000		
8477.90	86	01		사출성형기의 것	ex	8477.90-0000		
8479.89	55		그 밖의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	쓰레기 압축기	ex ex	8479.89-1090 8479.89-9099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79.89	65			전동기가 내장된 그 밖의 전기기계식 기기	ex ex	8479.89-1090 8479.89-9099	○
8479.90	45		제8479호 기계의 부분품	쓰레기 압축기의 것	ex ex	8479.90-1020 8479.90-9090	○
8479.90	55				ex ex	8479.90-1020 8479.90-9090	○
8479.90	65				ex ex	8479.90-1020 8479.90-9090	○
8479.90	75				ex ex	8479.90-1020 8479.90-9090	○
8479.90	85				ex ex	8479.90-1020 8479.90-9090	○
8479.90	95			기타		8479.90-9010 8479.90-9020 8479.90-9030 8479.90-9040 8479.90-9050 8479.90-9060 8479.90-9070 8479.90-9090	○
8480.49	00	10	덕타일 주철관 원심주조용 금형		ex	8480.49-0000	
8480.71	80	45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ex	8480.71-0000	
8480.71	80	60			ex	8480.71-0000	
8480.79	90	10			ex	8480.79-0000	
8482.10	50	04	볼베어링(샤프트 일체 형 제외)	연마하지 않은 것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08		쓰러스트 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12		리니어 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16		앵글러 콘택트 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24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28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32		단열베어링(최대 용량)	ex ex	8482.10-2000 8482.10-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82.10	50	36		외경 9mm 미만	ex	8482.10-2000	
8482.10	50	52		외경 52~100mm	ex	8482.10-2000	
8482.10	50	56		외경 100mm 초과	ex	8482.10-9000	
8482.10	50	60		복열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64		기타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10	50	68		비 radial 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8482.20	00	64	원추형 롤러베어링	외경 203~305mm	ex	8482.20-0000	
8482.20	00	67		외경 305mm 초과	ex	8482.20-0000	
8482.20	00	90		콘 어셈블리	ex	8482.20-0000	
8482.99	05		베어링 부분품	링 또는 레이스	ex	8482.99-0000	
8482.99	15				ex	8482.99-0000	
8482.99	25				ex	8482.99-0000	
8482.99	35			기타	ex	8482.99-0000	
8482.99	45				ex	8482.99-0000	
8482.99	65				ex	8482.99-0000	
8483.10	10	10	전동축, 크랭크	제87류 차량용 캄샤프트	ex	8483.10-9010	○
8483.10	10	50		기타의 캄 샤프트	ex ex	8483.10-1000 8483.10-9090	○
8483.10	50			그 밖의 전동축	ex ex ex	8483.10-1000 8483.10-9010 8483.10-9090	○
8483.20	4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을 갖춘 것)	플랜지, 행거 유닛		8483.20-1000 8483.20-9000	
8483.20	80			기타			
8483.30	4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것)	플랜지, 행거 유닛		8483.30-1000 8483.30-9000	○
8483.30	80			기타			
8483.40	10		기어와 기어링	토크 컨버터	ex ex	8483.40-1090 8483.40-9090	○
8483.40	50	20		기어링 등	ex ex ex	8483.40-9020 8483.40-9030 8483.40-9090	○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483.40	90				ex ex ex	8483.40-1090 8483.40-9010 8483.40-9090	○
8483.50	60		플라이 휠과 폴리	플라이 휠	ex ex	8483.50-1000 8483.50-9000	○
8483.50	90			기타	ex ex	8483.50-1000 8483.50-9000	○
8483.60	40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 링 등	클러치와 유니버설 조 인트		8483.60-1000 8483.60-2000 8483.60-9000	○
8483.60	80			기타			
8483.90	20		베어링 하우징 및 플 레인 샤프트 베어링 부분품	플랜지, 카트리지 및 행거의 부분품	ex ex ex	8483.90-1000 8483.90-2000 8483.90-9000	○
8483.90	30			기타	ex ex ex	8483.90-1000 8483.90-2000 8483.90-9000	○
8483.90	50		기어링 부분품		ex ex ex	8483.90-1000 8483.90-2000 8483.90-9000	○
8483.90	70		제8483.20호 물품의 부분품		ex ex ex	8483.90-1000 8483.90-2000 8483.90-9000	
8483.90	80		기타 부분품		ex ex ex	8483.90-1000 8483.90-2000 8483.90-9000	○
8501.53	40		출력 75킬로와트 초과 의 다상 교류 전동기	75~149.2킬로와트 미 만의 것		8501.53-1010 8501.53-1090 8501.53-2000 8501.53-4000	○
8501.53	60			149.2~150킬로 와트 의 것			○
8501.53	80			기타			
8501.64	01	10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용 교류발전기		ex	8501.64-0000	
8502.31	00	00	풍력발전세트			8502.31-1000 8502.31-2000 8502.31-4000	○
8503.00	35		제8501호 물품의 고 정자와 회전자	출력 18.65와트 미만 의 전동기용	ex	8503.00-1000	
8503.00	45			항공기에 사용하기 적 합한 발전기용	ex	8503.00-209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503.00	65			기타	ex ex ex	8503.00-1000 8503.00-2010 8503.00-2090	
8503.00	75		그 밖의 부분품(발전기, 전동기, 발전세트)	출력 18.65와트 미만의 전동기용	ex	8503.00-1000	
8503.00	90			항공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기용	ex	8503.00-2090	
8503.00	95			기타	ex ex ex ex	8503.00-1000 8503.00-2010 8503.00-2090 8503.00-3000	
8504.23	00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초과 유입식 변압기			8504.23-0000	
8504.33	00		용량 16~500킬로볼트 암페어의 기타 변압기			8504.33-1000 8504.33-2000 8504.33-9010 8504.33-9020 8504.33-9040	○
8504.90	96	34	변압기 부분품	코어에 장착하기 위한 접착층	ex	8504.90-9000	
8504.90	96	38		변압기에 장착하기 위한 코어	ex	8504.90-9000	
8504.90	96	42			ex	8504.90-9000	
8509.80	20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8509.80-4000	
8514.20	4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ex	8514.20-1000	○
8514.20	60				ex ex ex ex	8514.20-2000 8414.20-3000 8514.20-9000	
8516.29	00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기			8516.29-0000	
8516.60	40		그 밖의 오븐, 쿠키, 조리판 ... <후략>			8516.60-1000	
8516.60	60					8516.60-2000 8516.60-9000	
8547.90	00		그 밖의 절연용 물품			8547.90-0000	
8601.10	00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이나 축전지로 구동)			8601.10-0000	
8601.20	00					8601.20-0000	
8602.10	00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			8602.10-0000	
8602.90	00					8602.90-0000	
8603.10	00		철도용 객차와 화차(자주식)			8603.10-1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603.10-2000		
8603.90	00					8603.90-1000 8603.90-2000		
8604.00	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8604.00-4000 8604.00-9000		
8605.00	00		철도용 객차(비자주식)			8605.00-1000 8605.00-2000 8605.00-9000		
8607.11	00		철도용 기관차나 차량 의 부분품	구동식 보기		8607.11-0000		
8607.19	03	00		차축		8607.19-1000		
8607.19	06			차축의 부분품		8607.19-1000		
8607.19	12			차륜		8607.19-2000		
8607.19	15			차륜의 부분품		8607.19-2000		
8607.19	90			그밖의 차축, 차륜의 부분품	ex ex	8607.19-3000 8607.19-9000		
8607.21	50			에어브레이크	ex	8607.21-0000		
8607.30	10	10		축과 그 밖의 연결장 치 등		8607.30-1000 8607.30-2000 8607.30-3000 8607.30-9000		
8607.30	10	50						
8607.30	10	90						
8607.30	50							
8607.91	00				그 밖의 기관차 부분 품		8607.91-0000	
8607.99	50				기타	ex	8607.99-0000	
8609.00	00		컨테이너			8609.00-1000 8609.00-2000 8609.00-3000 8609.00-4000 8609.00-5000 8609.00-9000		
8701.10	01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701.10-0000		
8701.21	00	80	로드 트랙터(중고)	디젤 엔진		8701.21-2000		
8701.22	00	80		디젤 하이브리드		8701.22-2000		
8701.23	00	80		가솔린 하이브리드		8701.23-2000		
8701.24	00	80		전기모터		8701.24-2000		
8701.29	00	80		기타		8701.29-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701.30	10	무한궤도식 트랙터			8701.30-0000	
8701.30	50					
8701.91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18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1-2000	
8701.91	50		기타		8701.91-1010 8701.91-1020 8701.91-9000	
8701.92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2-2000	
8701.92	50		기타		8701.92-1010 8701.92-1020 8701.92-9000	
8701.93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3-2000	
8701.93	50		기타		8701.93-1010 8701.93-1020 8701.93-9000	
8701.94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	농업용		8701.94-2000	
8701.94	50		기타		8701.94-1010 8701.94-1020 8701.94-9000	
8701.95	10	그 밖의 트랙터 (동력 130킬로와트 초과)	농업용		8701.95-2000	
8701.95	50		기타		8701.95-1010 8701.95-1020 8701.95-9000	
8702.10	31	디젤엔진만을 갖춘 것	16인승 이상		8702.10-2010 8702.10-2020 8702.10-3010 8702.10-3020	
8702.10	61		기타		8702.10-1010 8702.10-1020	
8703.10	10	설상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10-1000 8703.10-2000 8703.10-9000		
8703.10	50					
8703.21	01	실린더 용량 1,000cc 이하의 피스톤 엔진 차량		8703.21-7000 8703.21-8000		
8705.10	00	기중기차		8705.10-1000 8705.10-2000 8705.10-9000		
8705.20	00	이동식 시추용 데릭차		8705.20-0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705.90	00	10	이동 방사선차	ex	8705.90-9090	
8705.90	00	20	이동진료차		8705.90-9050	
8706.00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새시	ex	8706.00-1000	
8708.10	30		범퍼	ex	8708.10-0000	
8708.29	21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바디 스탬핑	ex	8708.29-0000	
8708.40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기어박스	ex	8708.40-0000	
8708.40	6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기어박스 부분품	ex	8708.40-0000	
8708.92	1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소음기와 배기관	ex	8708.92-0000	
8708.92	50		그 밖의 차량용의 소음기와 배기관	ex	8708.92-0000	
8708.92	6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소음기와 배기관 부분품	ex	8708.92-0000	
8708.92	75		그 밖의 차량용의 소음기와 배기관 부분품	ex	8708.92-0000	
8708.93	15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클러치	ex	8708.93-0000	
8708.93	30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클러치 부분품	ex	8708.93-0000	
8708.99	23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1010	
8708.99	81		제87류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	ex ex ex ex ex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8710.00	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8710.00-1000 8710.00-2000 8710.00-9000	
8711.30	00		실린더 용량 50cc시 초과 250cc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1000 8711.30-9000	
8711.50	00		실린더 용량 800cc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50-1000 8711.50-9000	
8711.60	00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8711.60-1000 8711.60-9000	
8714.10	00		모터사이클의 부분품		8714.10-1000 8714.10-9000	
8716.10	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		8716.10-0000	
8716.39	00		화물수송용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9-0000	
8716.80	10		그 밖의 차량		8716.80-1000 8716.8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8716.80	50					8716.80-3000 8716.80-9000	
8716.90	10		농장용 왜건과 카트의 부분품		ex	8716.90-9000	
8716.90	30		제8302호의 것을 제외한 카스터		ex ex	8716.90-1000 8716.90-9000	
9401.71	00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	속을 댄 것		9401.71-1000 9401.71-9000	
9401.79	00			기타		9401.79-1000 9401.79-9000	
9403.10	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9403.10-0000	
9403.20	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00 9403.20-9000	○
9403.99	10		제9403호 가구의 부분품(목재로 만든 것 제 외)		ex	9403.99-0000	
9403.99	20				ex	9403.99-0000	
9403.99	40				ex	9403.99-0000	
9403.99	90	10			ex	9403.99-0000	
9403.99	90	15			ex	9403.99-0000	
9403.99	90	20			ex	9403.99-0000	
9403.99	90	40			ex	9403.99-0000	
9403.99	90	45			ex	9403.99-0000	
9403.99	90	51			ex	9403.99-0000	
9403.99	90	61			ex	9403.99-0000	
9405.99	20		그 밖의 조명기구 부 분품	황동제의 것		9405.99-0000	
9405.99	40			기타			
9406.20	00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으로 만든 것)			9406.20-0000	
9406.90	01		그 밖의 조립식 건축물			9406.90-1000 9406.90-2000 9406.90-3000 9406.90-9000	
9506.91	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경기에 사 용하는 물품			9506.91-0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도 역시 철강 재료의 비중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철강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에 계기된 세율이나 상호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그룹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HTSUS 제7614.10.10호의 물품이다. 여기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으로서 코어 부분인 철강이면서 연결구류가 장착되지 않은 제품이 포함된다. 수입조정 취지에서 보자면 이러한 물품은 코어의 철강 비중에 따라 50%의 추가관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해진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조정 조치에 따라 HTSUS 제7614.10.10호의 물품에는 이미 추가관세 50%가 부과된다. 즉, 철강을 기준으로 하든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든 이러한 물품에 적용되는 추가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 코드를 철강제품 수입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코어가 철강제인 알루미늄 연선 ●



그 밖에도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 중 제8302호의 장·부착구, 제8483호의 전동 엘리먼트 등은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조정 조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II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II |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알루미늄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포고문 10895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6월 4일 이를 다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알루미늄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품별 관세율은 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산정되며, 알루미늄 재료 이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기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5의 이행을 위해 포고문에서 언급한 알루미늄제품의 추가관세 부과를 위해 미국의 HTSUS 제99류를 개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상무부는 새로운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까지¹⁾ 미국 정부의 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도서는 2026.3.1. 기준으로 작성됐다.

1)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895(2025.2.10.) :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

포고문 10895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기준으로 123개 코드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제76류의 알루미늄제품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제83류와 제84류 등에 분포돼 있다. 특이한 점은 제9506호(운동용구)와 제9507호(낚시용구) 중 22개 품목이 수입 조정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포고문 10895 본문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기존에 관세 면제나 쿼터 혜택을 받던 국가들에 대한 모든 예외 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 철강과 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터 없이 10%의 관세 부과를 감수해 왔다. 그리고 포고문 10895의 조치에 따라 한국산 알루미늄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됐다.

2) 미국 상무부 공고(2025.3.10.) : 포고문 이행을 위한 HTSUS 제99류 개정 공고²⁾

포고문 공포 이후 2025년 3월 5일,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연방관보에 공고하면서 수입조정 대상 품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 공고에서 상무부는 포고문 10895의 취지에 따라 포고문 부속서에 언급된 123종의 품목만 아니라 수입쿼터 폐지로 25% 추가관세 편제로 복귀하게 된 품목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9호 (g)항의 물품

- * 제7601호의 알루미늄 괴
- * 제7604호의 알루미늄 봉과 프로파일
- * 제7605호의 선
- * 제7606호의 판·시트(sheet)·스트립
- * 제7607호의 박
- * 제7608호와 제7609호의 관
- * 미국 통계코드 제7616.99.51호의 주조 및 단조품

2) '미국 내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Aluminum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 90 FR 11251, 문서번호 : 2025-03596

② HTSUS 제99류 제Ⅲ절 주 제19호 (i)항의 물품

- * 미국 소호 제7614.10.50호와 제7614.90.20호, 제7614.90.40호, 제7614.90.50호의 연선·케이블·얹은 밴드 등
- * 미국 소호 제8708.10.30호의 범퍼 스탬핑
- * 미국 소호 제8708.29.21호의 바디 스탬핑

3) 미국 상무부 공고(2025.4.4.) :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³⁾

이후 2025년 4월 4일, 자국 산업계의 긴급 요청을 반영해 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알루미늄 캔에 담긴 맥주(제2203호)와 빈 알루미늄 캔(제7616호)을 추가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4) 미국 대통령 포고문 10947(2025.6.3.) : 추가관세 25%를 50%로 인상

2025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10895와 그 이행 공고를 통해 발표된 수입조정 대상 물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 10947)에 서명했다.

5) 미국 상무부 공고(2025.8.19.) : 포고문 10947 이행 및 대상 품목 추가 공고⁴⁾

그리고 이어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은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고했다. 이 공고에서는 기존의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76류 일부 물품이 추가로 편입되는 한편,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는 기계류 및 그 부분품 류가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알루미늄제 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군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이들 물품의 상세 목록과 적용세율은 미국의 HTSUS 제99류(Chapter 99)의 제3절(Sub-Chapter III)에 기재돼 있다⁵⁾.

3)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포고문 10895에 따른 알루미늄 파생제품(맥주 및 빈 알루미늄 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행(Implementation of Duties on Aluminum Derivatives Beer and Empty Aluminum Cans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연방관보 번호 : 90 FR 14786, 문서번호 : 2025-05884

4)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포함 절차의 채택 및 규정(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Inclusions Process)', 연방관보 번호 : 90 FR 40326, 문서번호 : 2025-15819

5) 이 책에서 언급한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대상 목록은 HTSUS 제99류 주 제19호 (g)항, (i)항, (j)항 및 (k)항의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들 조치에 따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알루미늄제품은 MFN 세율 이외에 추가관세 5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구성품 등은 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포고문 10895와 산업안보국의 공고문에 포함된 물품을 모두 통합해 설명하겠다. 제2항에서는 제76류 중심으로 미국이 지정한 수입조정 대상물품과 그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HSK와의 연계 분석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물품과 관련한 HTSUS 분류체계를 상세히 제공해 대상 품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항에서는 제76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 포함되는 수입조정 대상물품(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목록과 그에 대응되는 HSK 품목코드의 간략한 연계표를 제시한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의 연계표에는 참고를 위해 해당 물품이 앞서 언급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 조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제품(제76류)의 HSK 코드 분석

제76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제의 1차 원료 또는 이를 단순가공한 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601호부터 제7609호까지 분류된다. 본격적인 알루미늄제 제품은 제7610호부터 포함되는데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이, 제7611호부터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제 용기가, 제7614호에는 알루미늄제 로프와 케이블이 각각 분류되고, 그 밖의 제품은 제7615호와 제7616호에 각각 분류된다.

HS 제7601호, 제7604호, 제7605호, 제7606호, 제7607호, 제7608호와 제7609호는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당연히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HSK 코드의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포고문 10895는 제76류에서 주로 알루미늄제 완제품에 해당하는 제7610호 이후의 각 호의 물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입조정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 제7610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 <후략>			
7610.10	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610.1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0.90	00	- 기타	7610.90-1000 7610.90-8000 7610.90-9000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용 부분품 등이 분류된다. 철강제품의 경우 제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HSK 코드 기준으로는 제7610호에 포함되는 4개 코드의 물품이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2호 및 제7613호(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 제외)		
7612.10	00 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7612.10-0000	
7612.90		기타		
	10	- 용량 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7612.90-1000	
	50 00	- 기타	7612.90-9010 7612.90-9020 7612.90-9030	
7613.00	00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3.00-1000 7613.00-2000	

제7612호와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각종 용기가 분류된다. 철강제품으로 본다면 제7310호와 제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HSK 코드 기준으로는 제7612호와 제7613호에 포함되는 7개 코드의 물품이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다.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용량이 300리터 이상인 대형의 철강제 용기도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알루미늄의 경우 300리터 이상의 대형 용기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제7614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10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제품 형태로도 되지 않은 것		7614.10-0000	
	5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 형태로 된 것			
7614.90		기타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제품 형태로도 되지 않은 것			
	20	-- 전기전도체		7614.90-0000	
	40	-- 기타			
	5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 형태로 된 것			

제7614호에는 알루미늄제의 연선이나 케이블이 분류된다. 알루미늄 케이블로서 강(steel)이나 그 밖의 금속의 심(core)을 사용한 것은 알루미늄의 함유 중량이 많은 경우에 한정해 이 호에 분류한다. 제7614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5호(수입조정 대상 1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1 00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20	기타 -- 조리(cooking) 및 주방용구 --- 에나멜 또는 광택처리되었거나 눌러붙음 방지처리가 된 것 ---- 주물(cast)			
	15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7615.10-9010 7615.10-9020	
	25	----- 기타		7615.10-9030 7615.10-9090	
	30	---- 기타		7615.20-1000 7615.20-9000	
	15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25	----- 기타			
	50	--- 에나멜이나 광택처리되지 않고 눌러붙음 방지처리도 안된 것 ---- 주물(cast)			
	20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하 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40	----- 기타			
	71	---- 기타			
	25	----- 음식의 조제, baking, 재가열 및 저 장에 적합한 용기(두께 0.04mm 이 상 0.22mm 이하인 것) ----- 기타 cookware			
	30	----- bakeware(스토브 위에 올려 사용 하기 부적합한 조리기구)			
	55	----- 기타			
	80	----- 기타			
	91 00	-- 기타			
7615.20	00 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20-1000 7615.20-9000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가정용품이나 위생용품이 분류되며, 미국 HTSUS 10단 위 코드상으로는 12개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우리나라의 10단위 HSK 기준으로는 7개 품목으로 세분). 미국의 제7615호 세분류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면서도 복잡하다. 예를 들면, 세분류 체계에서 호의 용어에는 없는 ‘조리기구(cooking ware)’라는 표현을 쓰거나 주물제품과

기타의 제품, 또는 광택처리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하는 등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HTSUS 제7615.10.1100호의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7615호에서 HTSUS 코드와 HSK 코드를 일대일로 비교해 연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나 HSK상으로는 제7615호에서 제7615.10-1000호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616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못, 압정, 스테이플,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 홀,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0 00	- 못, 압정, 스테이플			
	30 00	- 리벳			
	50 00	- 코터와 코터핀			
		- 기타			
	70	-- 직경 6mm를 초과하는 자루, 나사산 또는 홀(hole)이 있는 것			
	30	--- 스레드 패스너(Threaded fastner)			
	90	--- 기타			
	90	-- 기타			
	30	--- Threaded fastner			
	90	--- 기타	ex	7616.10-0000	
7616.9		기타			
7616.91	00 00	알루미늄 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그릴, 망, 울 타리			
7616.99		기타			
	10 00	- Luggage frame		7616.99-1000	
	51	- 기타		7616.99-9010 7616.99-9020 7616.99-9090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616.10 소호에는 못, 압정, 볼트 너트 등의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된다. 이 소호에서 수입조정 대상 물품은 HTSUS 제 7616.10.9090호의 물품으로 못, 압정, 볼트, 너트, 스크루, 코터, 리벳 등 대부분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 잔여 물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HSK상으로는 제7616.10-0000호에 포함되는 극히 일부의 물품만 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범용성 부분품은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616.9 소호에는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 그 밖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며, HTSUS 코드상으로는 알루미늄 선으로 만든 클로스, 그릴, 망, 울타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HSK 코드로는 소호 제7616.99호에 속하는 모든 품목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3. 미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 10895는 제76류 이외에도 알루미늄 재료로 만든 다른 류의 제품, 특히 기계류의 부분품 등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다수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알루미늄의 비중에 따라 수입조정 조치에 따른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2025년 8월 19일, 산업안보국의 공고를 통해 수입조정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확대된 파생제품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초 포고문에서 규정한 물품과 같이 제76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금속 재료를 주로 해서 만드는 제품, 장치, 기계류 또는 그 부분품 종류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HS 제15부 이후에 분류된다. 공고문에는 제82류부터 제87류까지, 그리고 제94류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 특성상 철강 재료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84류(기계류)에 해당 품목이 가장 많다.

둘째는 알루미늄제 포장용기(container)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밀크, 조제식료품, 맥주, 유기·무기화합물, 화장품, 페인트 등은 유통 과정에서 알루미늄제의 캔이나 드럼, 탱크 등의 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알루미늄 용기의 우회 수입이 미국 산업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알루미늄제 용기를 사용하는 품목군 전체를 감시망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포고문과 추가 공고에 포함된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제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및 산물(수입조정 대상 7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0402.99	68		-- 그 밖의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ex ex	0402.99-1000 0402.99-9000		
0402.99	70			ex ex	0402.99-1000 0402.99-9000		
0402.99	90			ex ex	0402.99-1000 0402.99-9000		
2106.90	99	98	--- 그 밖의 조제식료품	ex ex	2106.90-1010 2106.90-1020 2106.90-1090 2106.90-2000 2106.90-3011 2106.90-3019 2106.90-3021 2106.90-3029 2106.90-9010 2106.90-9021 2106.90-9022 2106.90-9023 2106.90-9030 2106.90-9040 2106.90-9050 2106.90-9060 2106.90-9070 2106.90-9091 2106.90-9099		
2203.00	00		맥주		2203.00-0000		
2710.19	30	50	--- 그 밖의 석유와 역청유(steam cylinder oil)	ex	2710.19-7210		
2903.43	10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플루오로메탄(HFC-41), 1, 2 - 디 플 루 오 로 에 탄 (HFC-152)과 1,1-디플루오 로에탄(HFC-152a)	2903.43-0000		
2903.45	1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HFC-134a)과 1,1,2,2-테트 라플루오로에탄(HFC-134)	2903.45-0000	
2903.49	00				기타[트 리 플 루 오 로 메 탄 (HFC-23) 제외]	2903.49-1000 2903.49-9000	
2903.51	10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2903.5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90	그 밖의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 도체		2903.59-0000	
3208.10	00	비수성 매질에 분산 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폴리에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10-1010 3208.10-1090 3208.10-2000 3208.10-3000	
3208.20	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8.20-1011 3208.20-1019 3208.20-1020 3208.20-1030 3208.20-2011 3208.20-2019 3208.20-2020 3208.20-2030	
3208.90	00		기타	3208.90-1011 3208.90-1019 3208.90-1020 3208.90-1030 3208.90-9011 3208.90-9019 3208.90-9020 3208.90-9030	
3209.10	00	수성 매질에 분산한 페인트, 바니쉬, 에나 멜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209.10-1011 3209.10-1019 3209.10-1020 3209.10-2010 3209.10-2020	
3209.90	00		기타	3209.90-1011 3209.90-1019 3209.90-1020 3209.90-9011 3209.90-9019 3209.90-9020	
3213.90	00	세트 상태가 아닌 화가용 물감 등		3213.90-1000 3213.90-2000 3213.90-9000	
3214.10	0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		3214.10-106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3214.10-1080 3214.10-1090 3214.10-2000 3214.10-9000	
3303.00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향수와 화장수	플로럴 워터		3303.00-1000 3303.00-2000	
3303.00	20		기타			
3303.00	30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와 화장수				
3304.30	0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30-1000 3304.30-9000		
3304.99	50	그 밖의 화장품		3304.99-1000 3304.99-2000 3304.99-3000 3304.99-9000		
3305.10	00	두발용 제품류	샴푸		3305.10-0000	
3305.30	00		헤어 래커(hair lacquer)		3305.30-0000	
3305.90	00		기타		3305.90-1000 3305.90-2000 3305.90-9000	
3306.90	00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약과 치실 제외)		3306.90-1000 3306.90-2000		
3307.10	10	면도용 제품류	알코올 비함유		3307.10-1000 3307.10-9000	
3307.10	20		알코올 함유			
3307.20	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20-0000		
3307.49	00	그 밖의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00		
3307.90	00	그 밖의 화장용품		3307.90-1000 3307.90-3000 3307.90-4000 3307.90-9000		
3401.30	1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곱과 조제품	방향성분 함유		3401.30-0000	
3401.30	50		기타		3401.30-0000	
3402.31	9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방향성분 비함유)		ex	3402.31-0000	
3402.49	90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방향성분 비함유)		ex	3402.49-0000	
3402.50	11	소매포장된 조제제 등	방향성분 함유		3402.50-1000 3402.50-2000 3402.50-9000	
3402.50	51		방향성분 비함유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402.90	10		그 밖의 조제 세제 등	합성세제		3402.90-1000	3402.90-2000 3402.90-3000	
3402.90	30			기타(방향성분 함유)				
3402.90	50			기타(방향성분 비함유)				
3403.19	1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한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50% 이상		3403.19-1000 3403.19-3000	3403.19-4000 3403.19-5000 3403.19-9000	
3403.19	50			기타				
3403.99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조제윤활유(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은 제외)			3403.99-1000 3403.99-2000 3403.99-9000		
3405.10	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10-0000		
3405.20	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20-0000		
3405.40	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3405.40-0000		
3405.90	00		그 밖의 광택제(차체 광택제 제외)			3405.90-1030 3405.90-1090 3405.90-9000		
3506.10	50		순중량 1kg 이하로 소매포장된 글루(동물성 글루와 카제인 글루 제외)		ex ex ex	3506.10-1000 3506.10-2000 3506.10-9000		
3506.91	10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점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패널 제조용)		3506.91-1000		
3506.91	50			기타			3506.91-9000	
3506.99	00		그 밖의 접착제			3506.99-1000 3506.99-9000		
3808.5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59	40			살균제	ex ex	3808.59-1000 3808.59-9000		
3808.61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1-1000 3808.61-9000		
3808.61	50			기타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3808.62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순중량 300그램~7.5킬로그램 이하 포장)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2-1000 3808.62-9000	
3808.62	50		기타			
3808.69	10	제38류 소호주 제1호의 물품(기타)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3808.69-1000 3808.69-9000	
3808.69	50		기타			
3808.91	15	살충제	방향성 살충제를 함유한 것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25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30		무기원료를 함유한 것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1	50	기타	ex	3808.91-1000		
			ex	3808.91-9000		
3808.94	10	소독제	방향성 소독제를 함유한 것		3808.94-0000	
3808.94	50		기타			
3809.91	00	섬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가공제 등			3809.91-0000	
3810.10	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등			3810.10-1000 3810.10-9000	
3811.19	00	안티녹(anti-knock)제(납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이외의 것)			3811.19-0000	
3811.21	0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는 윤활유 첨가제			3811.21-0000	
3814.00	10	유기혼합용제	5~25퍼센트의 방향성분 함유		3814.00-1020 3814.00-1030	
3814.00	20		25퍼센트 이상 방향성분 함유		3814.00-1090 3814.00-2110 3814.00-2190	
3814.00	50		기타		3814.00-2910 3814.00-2990	
3820.00	00	부동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1000 3820.00-2000	
3824.99	93	97	그 밖의 화학공업생산물	ex ex ex ex ex ex	3824.99-1000 3824.99-2100 3824.99-2210 3824.99-2290 3824.99-2900 3824.99-31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S	HTSUS	품명			
			ex	3824.99-3910	
			ex	3824.99-3990	
			ex	3824.99-4100	
			ex	3824.99-4200	
			ex	3824.99-4300	
			ex	3824.99-4400	
			ex	3824.99-5100	
			ex	3824.99-5200	
			ex	3824.99-5300	
			ex	3824.99-6100	
			ex	3824.99-6200	
			ex	3824.99-6300	
			ex	3824.99-6400	
			ex	3824.99-6500	
			ex	3824.99-6600	
			ex	3824.99-7100	
			ex	3824.99-7200	
			ex	3824.99-7300	
			ex	3824.99-7400	
			ex	3824.99-7500	
			ex	3824.99-7600	
			ex	3824.99-7700	
			ex	3824.99-8000	
			ex	3824.99-9010	
			ex	3824.99-9020	
			ex	3824.99-9030	
			ex	3824.99-9040	
			ex	3824.99-9052	
			ex	3824.99-9053	
			ex	3824.99-9059	
			ex	3824.99-909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은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나 알루미늄제 용기에 수용된 채로 거래되는 경우 그 비중에 따른 추가관세가 포함되며 알루미늄 재료를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상 세율이나 글로벌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 그 밖의 알루미늄재료를 사용한 제품, 기구, 기계류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126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6603.90	81	00	우산의 기타 부분품	ex	6603.90-9000	
7308.20	00	35	풍력터빈용 타워	ex	7308.20-0000	
8302.10	30	00	경첩과 그 부 분품(알루미늄 제)	ex	8302.10-0000	
8302.10	60		기타	ex	8302.10-0000	○
8302.20			카스터(caster)와 그 부분품		8302.20-0000	○
8302.30	3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철강, 알루 미늄, 아연제의 것)	ex	8302.30-0000	
8302.41	30		건물용으로 적 합한 장착구, 부 착구	ex	8302.41-1000	
8302.41	60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ex	8302.41-1000 8302.41-9000	
8302.42	30		가구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철강, 알루미 늄, 아연제의 것)	ex	8302.42-0000	○
8302.49	60		기타(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ex ex	8302.49-1000 8302.49-9000	○
8302.50	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302.50-0000	
8302.60	30		자동도어 폐지기		8302.60-0000	
8302.60	90		부분품			
8305.10	00	50	그 밖의 서류철용 피팅	ex	8305.10-0000	
8306.30	00		사진틀,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8306.30-1000 8306.30-2000	
8307.90	60	00	알루미늄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를 부착 하지 않은 것)	ex	8307.90-0000	
8309.90	00	20	알루미늄제의 캡	ex	8309.90-1000	
8309.90	00	25	음료용 캔의 것 기타	ex	8309.90-9000	
8412.90	90	70	부분품	ex	8412.90-9000	○
8412.90	90	75	풍력터빈 블레이드 풍력터빈 허브	ex	8412.90-9000	○
8413.81	00		그 밖의 펌프		8413.81-1000 8413.81-2000 8413.81-9000	○
8414.59	65	90	기타의 팬(축류형)	ex	8414.59-1000	○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ex	8414.59-9000	
8414.80	16		그 밖의 기체압축기(터보차저 제외)		ex ex ex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
8415.90	80	25	-- 공기조절기 용 기타 부 분품	증발코일	ex	8415.90-0000	○
8415.90	80	45		자동차용의 것			○
8415.90	80	85		기타			○
8418.10	00		일체형 냉장 냉동고			8418.10-1010 8418.10-1020 8418.10-1030 8418.10-9000	○
8418.99	80	05	---- 냉장기기의 부분품		ex ex	8418.99-1000 8418.99-9000	
8418.99	80	50					
8418.99	80	60					
8419.50	10	00	- 열교환기	알루미늄 플레이트-핀으로 된 것		8419.50-1000 8419.50-2000 8419.50-9000	○
8419.50	50	00		기타			○
8419.90	10	00	-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의 것			8419.90-9010	○
8422.90	06	40	가정용 접시 세척기의 부분품		ex	8422.90-1000	
8424.89	90		그 밖의 분사, 분무용 기기			8424.89-1000 8424.89-9000	
8424.90	90	80	제8424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 (소화기, 피스톤 펌프 스트레이, 샌드 블라스팅 머 신, 스팀젯 분사기의 것 제외)		ex ex ex ex ex	8424.90-2000 8424.90-3000 8424.90-9010 8424.90-9020 8424.90-9090	
8443.16	00	00	곡면 인쇄용 기계			8443.16-0000	
8450.11	00		완전자동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이하)			8450.11-0000	
8450.20	00		세탁기(세탁능력 10킬로그램 초과)			8450.20-0000	
8451.21	00		건조기			8451.21-0000	
8467.22	00		수지식 공구(전동 기를 갖춘 것)	톱		8467.22-0000	
8467.29	00			기타		8467.29-0000	
8467.81	00		수지식 공구	체인 소우		8467.81-0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467.89	50		기타(금속가공에 부적합한 것)		ex ex ex ex	8467.89-1010 8467.89-1020 8467.89-1090 8467.89-9000	
8473.30	20		제8471호 기 계의 부분품	인쇄회로 조립품의 부분품과 부속 품	ex	8473.30-9090	
8473.30	51			기타	ex	8473.30-9090	
8479.89	95	99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HTSUS 제8479.89호에 따로 계기된 모든 기기 제외)		ex	8479.89-9099	○
8479.90	85	00	제8479호 기계의 부분품	- Trash compactor의 기타 부분품	ex	8479.90-9090	○
8479.90	95	96		- 기타의 부분품(산업용 로봇, 나무 또는 코르크용 프레 스, 공공작업용 기기, 금속 취급용 기기 등에 사용하는 것 제외)	ex	8479.90-9020 8479.90-9030 8479.90-9050 8479.90-9070 8479.90-9090	○
8481.90	90	60	탭, 코크, 밸브의 부분품	밸브바디(제8481.20호의 것 제외)	ex	8481.90-0000	
8481.90	90	85		기타	ex	8481.90-0000	
8483.40	50	20	풍력터빈용 기어박스 등		ex ex ex	8483.40-9020 8483.40-9030 8483.40-9090	○
8483.90	50	20	풍력터빈용 기어박스 등의 부분품		ex	8483.90-2000	○
8486.90	00		제8486호 기기의 부분품			8486.90-1000 8486.90-2030 8486.90-2040 8486.90-2090 8486.90-3050 8486.90-3060 8486.90-3090 8486.90-4000	
8487.90	00	80	기타의 기계류의 부분품			8487.90-1000 8487.90-9090	
8501.64	01	10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용 교류발전기		ex	8501.64-0000	
8502.20	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2.20-1000 8502.20-2000 8502.20-3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502.20-3090 8502.20-4000	
8502.31	00	00	풍력 발전세트		8502.31-1000 8502.31-2000 8502.31-4000	○
8503.00	95	20	모터의 부분품(정류자, 고정자 및 회전자 제외, 18.65와트 이하인 모터용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품)	ex	8503.00-1000	
8503.00	95	46	제8501호 및 제8502호 기기의 기 타 부분품	ex	8503.00-2010	
8503.00	95	70	제8501.61호의 교류발전기의 것 제8502.31호의 풍력발전세트 의 것	ex	8503.00-2010	
8504.31	20		용량 1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의 그 밖의 변압기		8504.31-1000	○
8504.31.	40				8504.31-2000 8504.31-9010	○
8504.31.	60				8504.31-9020 8504.31-9040	○
8504.33	00		용량 16~500킬로볼트 암페어의 기타 변압기		8504.33-1000 8504.33-2000 8504.33-9010 8504.33-9020 8504.33-9040	○
8504.34	00		용량 500킬로볼트 암페어를 초과하는 기타 변 압기		8504.34-1000 8504.34-2000 8504.34-9010 8504.34-9030	
8504.90	20		제8504호 기기의 부분품		8504.90-1000	
8504.90	41				8504.90-9000	
8504.90	65					
8504.90	75					
8504.90	96					
8508.70	00		진공청소기의 부분품		8508.70-1000 8508.70-2000 8508.70-3000	
8513.90	20		Flashlight의 부분품	ex	8513.90-0000	
8515.90	20		용접용 기기의 부분품		8515.90-1010 8515.90-109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8516.90	50		제8516호 기기의 부분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기타 부분품	ex	8516.90-0000	
8516.90	80	50		소호의 조리용 스토브, 레인 지, 오븐의 기타 부분품	ex	8516.90-0000	
8517.71	00		-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8517.71-1000 8517.71-9000	○
8517.79	00		- 기타의 제8517호 기기의 부분품			8517.79-1010 8517.79-1020 8517.79-1030 8517.79-2000 8517.79-3000 8517.79-4000	
8529.90	73	00	제8524~제8528 호 기기의 부분품	레이다, 무선 항행용 기기, 무 선 원격조절기의 부분품	ex	8529.90-4000	○
8529.90	97	60		무선 원격 조절기의 기타 부 부분품	ex	8529.90-4000	○
8536.90	85	85	- 그 밖의 접속용 기기		ex ex	8536.90-9010 8536.90-9090	
8538.10	00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 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 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538.10-0000	
8541.90	00		제8541호 기기의 부분품			8541.90-2000 8541.90-3000 8541.90-9000	
8543.90	88	85	- 기타(제외: 물리기상증착기 부분품, 비행기록장치 조립품, 입자가속기 부분품, 전자담배 부분품)		ex	8543.90-9000	
8544.19	00		권선용 전선(구리로 만든 것 제외)			8544.19-0000	
8544.49	20	00	접속자가 부착되 지 않은 1000볼 트 이하의 전기도 체	80볼트 이하(전기통신용 제 외)	ex ex ex	8544.49-1090 8544.49-2090 8544.49-9090	
8544.49	90	00		기타(구리로 만든 것 제외)	ex ex ex ex ex ex ex	8544.49-1012 8544.49-1090 8544.49-2012 8544.49-2090 8544.49-9012 8544.49-9090	
8544.60	60	00	그 밖의 1000볼트 초과의 전기도체(전기통신용		ex	8544.60-1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및 구리로 만든 것 제외)	ex	8544.60-1090	
				ex	8544.60-2010	
				ex	8544.60-2090	
				ex	8544.60-3010	
				ex	8544.60-3090	
8547.90	00	20	그 밖의 절연용 물 - 도관	ex	8547.90-0000	
8547.90	00	30	품	ex	8547.90-0000	
8547.90	00	40	그 밖의 조인트	ex	8547.90-0000	
8708.10	30		범퍼와 그 부분품		8708.10-0000	
8708.10	60		범퍼			
			범퍼의 부분품			
8708.29	21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바디 스탬핑	ex	8708.29-0000	
8708.29	51	60	차체의 기타 부분품	ex	8708.29-0000	
8708.80	65	90	서스펜션 시스템의 기타 부분품(제외 : 트랙터의 것, 주철의 것, 빔 행거 브래킷)	ex	8708.80-0000	
8708.99	68	90	파워트레인의 기타 부분품(제외: 트랙터의 것, 주철의 것, 주철제의 것, 유니버설 조인트(제8703호 및 제8704호 차량의 것)]	ex	8708.99-9000	
8716.39	00	40	화물수송용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밴 타입)	ex	8716.39-0000	
8716.80	50	10	산업용 핸드 트럭	ex	8716.80-1000	
				ex	8716.80-9000	
8807.30	00	60	기타(Civil aircraft용 부분품 제외)	ex	8807.30-1000	
				ex	8807.30-2000	
				ex	8807.30-3000	
9013.90	80		제9013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9013.90-9000	
9031.90	91	95	제9031호 기기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ex	9031.90-9000	○
9401.79	00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속을 댄 것 제외)		9401.79-1000	
					9401.79-9000	
9401.99	90	81	의자의 기타 부분품	ex	9401.99-1000	
					9401.99-9000	
9403.10	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9403.10-0000	
9403.20	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9403.20-1000	○
					9403.20-9000	
9403.99	10	40	부분품(나무로 만든 것 제외)	ex	9403.99-0000	
9403.99	90	10	모터차량용	ex	9403.99-0000	
			유아침대, 유모차, 요람용의	ex	9403.99-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항공기 부분품 면제 여부
HT	HTSUS		품명			
			것			
9403.99	90	15	어린이 안전 놀이터의 것	ex	9403.99-0000	
9403.99	90	20	용접한 wire rack	ex	9403.99-0000	
9403.99	90	40	steel rack의 부분품	ex	9403.99-0000	
9403.99	90	45	기타	ex	9403.99-0000	
9405.99	40	20	알루미늄제의 램프 포스트와 그 베이스	ex	9405.99-0000	○
9506.11	40	80	기타의 스키(제외: 크로스 컨트리용 스키, 스노보드)	ex	9506.11-0000	
9506.51	40		론테니스 라켓	ex	9506.51-0000	
9506.51	90		줄을 매지 않은 라켓	ex	9506.51-0000	
9506.51	90		부분품과 부속품	ex	9506.51-0000	
9506.59	40	40	배드민턴 라켓 및 라켓 프레임	ex	9506.59-1000	
9506.70	20	90	롤러스케이트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부츠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	ex	9506.70-0000	
9506.91	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506.91-0000	
9506.99	05		기타의 운동용구	ex	9506.99-0000	
9506.99	15		양궁용 물품	ex	9506.99-0000	
9506.99	20		야구용 장비	ex	9506.99-0000	
9506.99	20		풋볼, 축구, 폴로	ex	9506.99-0000	
9506.99	25	80	필드하키	ex	9506.99-0000	
9506.99	28		라크로스 스틱	ex	9506.99-0000	
9506.99	50		스노슈즈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ex	9506.99-0000	
9506.99	60		기타	ex	9506.99-0000	
9507.30			낚시 릴		9507.30-0000	
9507.90	60		물고기 뜰채, 잠자리채 및 이와 유사한 네트	ex	9507.90-1000 9507.90-9000	
9603.90	80	50	그 밖의 브러쉬와 빗자루	ex	9603.90-0000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도 역시 알루미늄 재료의 비중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알루미늄을 제외한 본품 자체는 HTSUS 코드상 세율이나 글로벌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HS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등이 분류되며, 미국 HTSUS 10단위 코드상으로는 36개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우리나라의 10단위 HSK 기준으로는 10개 품목으로 세분). 전반적으

로 제8302호의 HSK 세분류 코드 대부분이 미국의 수입조정 물품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조정 조치가 면제될 수 있다.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 팬, 기체압축기 등이 분류되며 HTSUS 코드상으로 1개의 물품만 수입조정 대상이다. 해당 물품은 제8414.59 소호의 ‘기타의 팬’ 중에서 파이프 오르간용 블로워, 자동차용에 적합한 것, 터보차저와 수퍼차저를 제외한 나머지 팬 중에서도 원심형과 축류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팬에 한정된다.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인 팬은 원심형과 축류형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해당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류형 팬(diagonal fan, mixed flow fan)이나 블레이드가 없는 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제8419호에는 가열, 배소, 증류, 응축, 냉각,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분류된다. 이러한 기계에는 비교적 복잡한 기계 구조를 갖춘 것뿐 아니라 기계적·전기적 구성부품 없이 단순한 형태의 기구나 구조물의 형상을 갖춘 것까지 다양하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8419.50 소호의 열교환기라고 할 수 있다. 열교환기는 그 특성상 서로 다른 유체(예를 들면, 고온의 증기와 냉각수) 사이의 원활한 열 교환을 위해 열 전도가 뛰어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알루미늄 소재의 열교환기는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III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자동차 및 중대형 차량·버스

Ⅲ | 자동차 및 중대형 차량·버스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경량트럭 및 자동차부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0908에 서명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HS 제8703호와 제8704호의 자동차 중 미국의 HTSUS 8단위 기준으로 17개 코드가 언급돼 있으며, 그 밖에도 HS 제40류부터 제94류에 걸쳐 자동차부품 및 연관 제품에 대해 HTSUS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기준으로 130개 코드가 규정돼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정된 미국의 HTSUS 제99류 주 제33호 (b)항과 (g)항에 명시돼 있다.

이어서 2025년 10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 및 버스에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 10984에 서명했다. 이 내용은 개정된 미국의 HTSUS 제99류 주 제38호 (b)항과 (c)항에 명시돼 있다.

포고문 10908과 10984의 부속서에 수록된 미국 HTSUS를 기준으로 대상 제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HSK를 연계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자동차, 경량트럭 및 부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에서는 완성자동차(제8703호와 제8704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HTSUS 8단위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은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특정 HS 4단위나 6단위를 계기한 경우 그 하위 8단위와 10단위 코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제8471호나 제8501.32호를 언급한 경우 이 호나 소호 전체의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HTSUS 10단위 기준으로 본다면 수입조정 대상 물품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1) 자동차(제8703호와 제8704호)

제87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농기계나 작업기계에 사용하는 트랙터는 제8701호에, 버스 등 10인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승용자동차는 제8702호에,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제8703호에 분류되며, 화물자동차는 제8704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의 자동차를 베이스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거나 특수한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장착한 특수용도차는 제8705호에 분류된다.

포고문에는 제8703호와 제8704호 중 일부 차량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내역을 보면 제8703호 차량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703호(수입조정 대상 1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 <후략>			
8703.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8703.22	01	-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8703.22-7000 8703.22-8000
8703.23	01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8703.23-1010 8703.23-102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3.23-9010 8703.23-9020
8703.24	01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10 8703.24-1020 8703.24-9010 8703.24-9020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0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31-7000 8703.31-8000
8703.32	0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03.32-1010 8703.32-1020 8703.32-9010 8703.32-9020
8703.33	01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7000 8703.33-8000
8703.40	0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40-1000 8703.40-2000
8703.50	0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50-1000 8703.50-2000
8703.60	0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1000 8703.60-2000
8703.70	0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1000 8703.70-2000
8703.80	0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80-1000 8703.80-2000
8703.90	01	기타	8703.90-0000

제8703호에는 10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가 분류된다. 제8703.10 소호에는 설상주행차나 골프용 차가 분류되며, 제8703.2 소호와 제8703.3 소호에는 피스톤 내연기관 차량이 분류되고, 하이

브리드 차량은 제8703.40 소호부터 제8703.70 소호까지, 그리고 추진용 전기모터만을 갖춘 차량은 제8703.80 소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제8703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차량이 제8708.90 소호에 분류된다.

이론적으로 제8703.90 소호에 피스톤 방식이 아닌 내연기관(가스터빈 또는 제트엔진), 외연기관(증기엔진), 풍력엔진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분류될 수 있겠으나, 상업적 관점에서 이러한 자동차들은 현대의 자동차산업에선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제8703.90호에 분류될 만한 물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포고문은 제8703.10 소호의 설상주행차 또는 골프용차와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로 구분되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자동차(제8703.21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동차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제8704호(수입조정 대상 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0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1-1010 8704.21-1020 8704.21-9010 8704.21-9020 8704.21-9090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1	0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1-1010 8704.31-1020 8704.31-9010 8704.31-9020 8704.31-9090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4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41	00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41-1010 8704.41-1020 8704.41-9010 8704.41-9020 8704.41-9090
8704.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5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51-1010 8704.51-1020 8704.51-9010 8704.51-9020 8704.51-9090
8704.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60	00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60-1010 8704.60-1020 8704.60-9010 8704.60-9020 8704.60-9090
8704.90		기타		

제8704호에는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분류된다. 제8704.10 소호에는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퍼가 분류되며, 그 밖에 피스톤식 내연기관만을 갖춘 화물자동차는 제8704.2 소호와 제8704.3 소호에 분류된다.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추진용 전기모터를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8704.4 소호와 제8704.5 소호에 분류되며,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화물차는 제8704.60호에 분류된다. 제8704호의 다른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화물차가 제8704.90호에 분류될 것이나 앞서 말한 제8703.90 소호와 같이 현재의 상업적 관점에서 이 소호에 분류될 만한 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포고문은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2) 자동차부품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제17부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7부에서 제외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할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이나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 각 호에서 특별히 제기하고 있는 물품이 포함된다. 즉, 자동차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부분품인 내연기관 엔진이나 전기모터, 시동용 전기기기나 각종 계측기 등은 이 제외규정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자동차부분품이 제8708호에 분류된다.

포고문은 HS 품목분류표의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제8708호만 아니라 자동차의 필수적인 부분품으로 이해되나 제17부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되는 광범위한 물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완성자동차의 경우 포고문은 제8703호와 제8704호의 일부 차량만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부품은 제8701호, 제8702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까지 확대해 수입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범용성 부품 등(수입조정 대상 20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1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제8701.20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의 차량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호스	ex	4009.12-0000
4009.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제8701.20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의 차량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호스	ex	4009.22-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제8701.20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의 차량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호스	ex	4009.32-0000
4009.4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제8701.20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의 차량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호스	ex	4009.42-0000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0		- Radial 구조의 것		4011.10-1000
	50		- 기타		4011.10-2000 4011.10-9000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10		- Radial 구조의 것		4011.20-1010 4011.20-1090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2.1			재생타이어		
4012.19			- 기타(승용자동차용, 버스 및 화물차용, 항공기용 제외)		
	20		-- 제8701호의 트랙터, 제84류의 농업용, 원예용 기계, 제8716호 차량에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 기타		
	40		--- Radial	ex	4012.19-0000
	80		--- 기타	ex	4012.19-0000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 기타(항공기, 트랙터, 농기계, 제8716호 차량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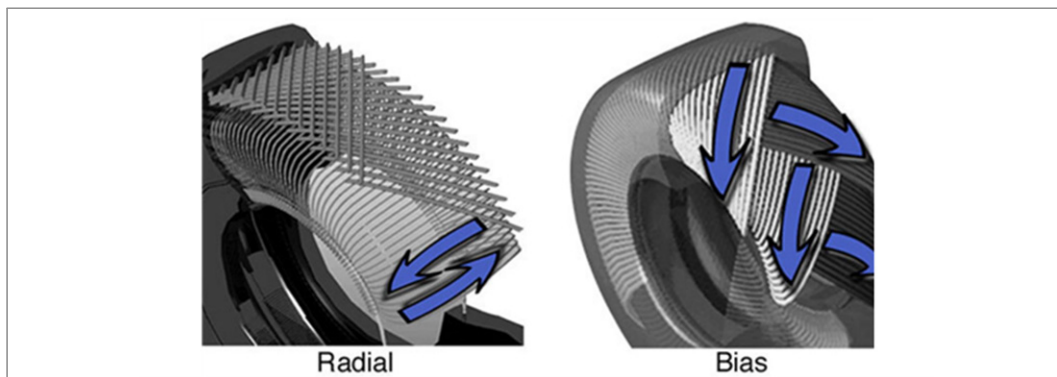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제외)		
	60		-- 고속도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자동차나 트랙터나 제8705호 차량에 사용하는 것	ex	4012.20-9010 4012.20-9020 4012.20-9090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버스용, 화물차용		
		10	-- 승용자동차용		4013.10-1000
		20	-- 버스 및 화물차용		4013.10-2000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99			- 기타		
	60		-- 기타		
		10	--- 자동차용의 기계 제품	ex ex	4016.99-1090 4016.99-900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2			접합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1		-- 방풍유리		
	51		-- 기타	ex ex	7007.21-1000 7007.21-200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00	00	자동차용 백미러		7009.10-0000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7320.10-1000 7320.10-2000 7320.10-9000
7320.20			나선형 스프링		
	10	00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ex	7320.20-1000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 <후략>		
8301.20	00		자동차용 자물쇠		8301.2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후략>		
8302.10		경첩		
	30 00	- 자동차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ex	8302.10-0000
<생략>				
8302.3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30-0000

제40류 물품의 상당수는 제16부나 제17부 기계 및 수송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더라도 제40류의 해당 호에 분류된다. 제4011호에는 신제품인 고무제의 공기타이어가 분류되고 제4012호에는 중고품이나 재생품인 타이어가 분류된다. 수입조정 대상에서 신제품 타이어와 재생 타이어의 기준이 다른데, 제4011호 타이어는 버스, 승용차, 화물차의 것, 즉 제8702호, 제8703호 및 제8704호 차량의 것이 수입조정 대상인 반면, 제4012호의 타이어는 이들 차량과 항공기용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타이어만 적용된다.

타이어의 경우 대체로 Radial(레이디얼) 타입인지에 따라 수입조정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나 제4011.20 소호의 버스나 화물차용 타이어의 경우 HTSUS 제4011.20.10호의 Radial 타입 타이어만 수입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Bias(바이어스) 타입의 타이어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레이디얼 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의 코드 플라이(Cord ply)가 타이어의 둘레 방향과 직각으로 배치돼 있는 구조이며, 바이어스 타이어는 코드 플라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해 배치된 구조의 타이어를 말한다.

●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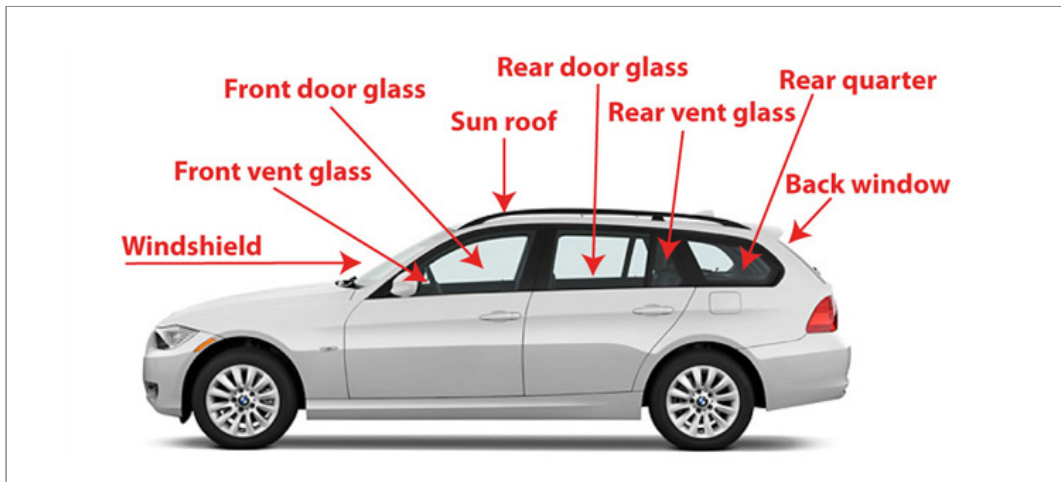


출처 : <https://infos.tistory.com/3923>

제7007호에는 자동차·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안전유리는 그 제조방식에 따라 열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통해 내부 응력을 높인 강화안전유리(제7007.1 소호)와 두 장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플라스틱 층을 끼워 만든 접합안전유리(제7007.2 소호)로 크게 나뉘고, 포고문은 자동차용의 접합안전유리에 대해서만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포고문은 접합안전유리 중에서도 HTSUS 제7007.21.11호의 ‘Windshield’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Windshield는 ‘방풍유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는 전방유리(windscreen)에 한정해 부르는 명칭이다. 따라서 전방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용 유리는 HTSUS 제7007.21.51호에 분류되며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HSK에서는 전방유리와 기타 유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 자동차용 유리의 각 명칭 ●



출처 : SALAZAR

제7007호의 자동차용 안전유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제8708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용 유리와의 구분이다. 자동차의 전후방 혹은 사이드 창에 부착하기 적합한 형태로 재단하고 강화 처리된 유리는 그 자체로 제7007호에 해당한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분류사례로는 여기에 반사층이 적층됐거나 가장자리를 검게 처리한 것까지 제7007호에 남는 물품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상태에서 틀(frame)을 붙이거나 서리 제거를 위해 열선을 장착하는 등의 추가가공이 된 물품은 제8708호에 분류한다.

□ 제84류 물품(수입조정 대상 3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3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8407.31-1000 8407.31-9000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8407.32-1000 8407.32-9000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8407.33-1000 8407.33-9000
8707.34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407.34-1000 8407.34-9000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 엔진)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차량에 결합되기 위한 것	ex ex ex ex ex	8408.20-1000 8408.20-2000 8408.20-3000 8408.20-4000 8408.20-5000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9			기타(항공기용 제외)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10		-- 주철제 부분품(최종 제품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세척, 돌기 등의 제거 이외의 기계작업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4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차량에 결합되기 위한 것	ex	8409.91-1000
8409.99			- 기타		
	10		-- 주철제 부분품(최종 제품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세척, 돌기 등의 제거 이외의 기계작업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차량에 결합되기 위한 것	ex	8409.99-700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 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10		-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연료분사 펌프	ex ex ex ex	8413.30-2000 8413.30-3000 8413.30-4000 8413.30-9000
	90		- 기타	ex ex ex ex ex	8413.30-1000 8413.30-2000 8413.30-3000 8413.30-4000 8413.30-9000
8413.9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10		--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연료분사 펌프	ex	8413.91-2000
	90		-- 기타		
		10	--- 제8413.30.90호의 것	ex ex ex ex ex ex	8413.91-1000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생략>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 <후략>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공기조절기용 포함)		
<생략>					
	80		- 기타(1/4 마력을 초과하는 것)		
			-- 기타(스크루타입이 아닌 것)		
			--- 암모니아를 제외한 모든 냉매용의 것		
		30	---- 자동차용	ex ex	8414.30-1000 8414.3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14.5		팬		
8414.51		-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4.59		- 기타		
		-- 기타(파이프 오르간용 블로워, 마이크로 프로세서 냉각용 팬 제외)		
	30	--- 터보차저 및 수퍼차저	ex	8414.59-9000
	65	--- 기타		
	4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	ex	8414.59-9000
<생략>				
8414.80		기타		
		- 공기압축기		
	05	-- 터보차저 및 수퍼차저	ex ex ex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생략>				
8415		공기조절기		
8415.20	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415.20-000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3	00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3-1000 8421.23-2000 8421.23-9000
8421.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2	00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8421.32-0000
8425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윈치(winch)와 캡스ตัน(capstan), 잭(jack)		
8425.4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9	00	- 기타		8425.49-1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25.49-2000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9		그 밖의 기계			
8426.91	00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426.91-0000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10 - 제8425.11호 또는 제8425.19호 기계의 것			
		90 - 기타	ex		8431.10-000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1.30-0000 8471.41-1000 8471.41-2000 8471.41-9000 8471.49-1010 8471.49-1020 8471.49-1090 8471.49-9000 8471.50-1000 8471.50-2000 8471.50-9000 8471.60-1010 8471.60-1020 8471.60-1030 8471.60-1040 8471.60-1090 8471.60-2000 8471.60-3000 8471.70-1000 8471.70-2020 8471.70-2031 8471.70-2032 8471.70-2033 8471.70-2039 8471.70-2090 8471.70-9000 8471.80-1000 8471.80-2000 8471.80-9000 8471.9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10	- Integral shaft 볼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50	- 기타		
		-- Unground bearing 이외의 기타 베어링		
		--- Radial 베어링		
		---- 단열 베어링		
		----- 맥시멈 타입 베어링		
		----- 기타		
	44	----- 외경 9mm 초과 30mm 이하의 것	ex	8482.10-2000
	48	----- 외경 30mm 초과 52mm 이하의 것	ex	8482.10-2000
<생략>				
8482.20	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것 포함]		
		- 세트 상태로 제시된 컵과 콘 어셈블리		
		-- 휠 허브 유닛		
	20	--- 플랜지가 결합된 것	ex	8482.20-0000
	30	--- 기타	ex	8482.20-0000
		-- 기타		
	4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6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 별도로 제시된 콘 어셈블리		
	7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8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8482.40	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40-0000
8482.50	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83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 <후략>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1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및 로터리식 내연기관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 제87류 자동차용의 것		
		10	--- 모터사이클용의 것		
		30	--- 기타		ex 8483.10-9010
<생략>					
	30		-- 기타		ex 8483.10-1000 ex 8483.10-9010 ex 8483.10-9090

자동차의 핵심 부분품으로서 제84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제8407호와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엔진이다. 포고문은 당연히 이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도 수입조정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7류에서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범위와 제8407호 및 제8408호에서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범위의 일관성은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제8407.3 소호에는 제87류 자동차에 사용되는 왕복 피스톤 엔진이 분류된다. 앞서 언급한 포고문상으로는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차량인 제8703.21 소호의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8407호에서는 실린더용량에 관계없이 제8407.3 소호에 포함되는 모든 엔진이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제87류에서는 제8701호와 제8711호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제8407호에서는 명확하게 제8711호 차량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소형(예를 들면 실린더용량 250cc 이하)의 엔진까지 모두 수입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포고문은 그 밖에도 제84류 물품 중 자동차용으로 특화된 액체펌프, 송풍기, 공기압축기, 공기조절기 및 필터 등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되는데 포고문은 제8471호 전체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중 ‘Automobile Parts’로 인정되는

물품이 포고문에 의한 추가관세 부과 대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의 범위는 그다지 넓어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통상 ‘자동차용의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되는 물품은 엔진제어유닛, 변속제어유닛, 차량 내부의 통신용 유닛이나 그 부분품,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텐데, 품목분류 관점에서 이러한 물품은 대부분 제8471호보다는 제85류 또는 제90류의 각 호나 제8708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자동차에서 엔터테인먼트나 네비게이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디스플레이 기기도 그 자체로는 제8528호에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물품이 다양한 입출력을 포함해 차량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제84류 주 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제8471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 시장의 동향으로 보건대, 이 계통에서 제8471호에 분류될 만한 물품은 진동, 고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자동차 장착형 컴퓨터(Vehicle Mount Computer)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 포크리프트에 설치된 Vehicle Mount Rugged Computer 예시 ●



출처 : ZEB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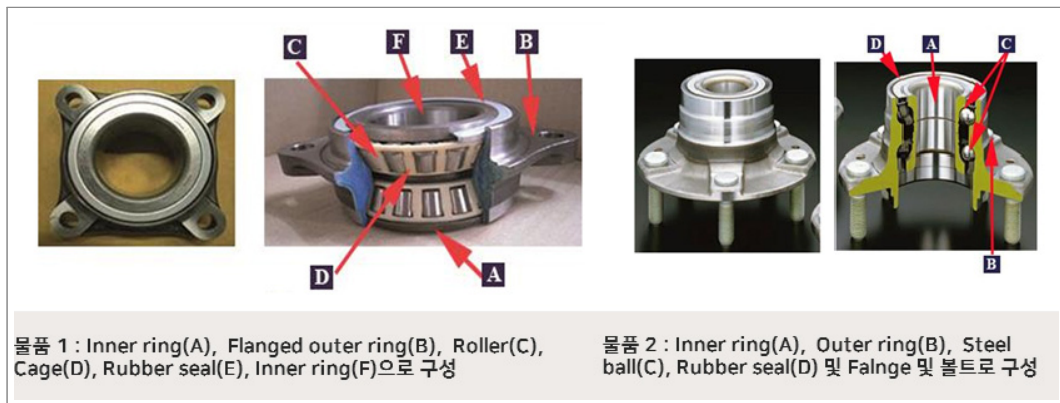
나아가 포고문은 제8482호의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도 폭넓게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8482.10 소호의 물품 중 내경 52mm 이하인 단열의 원형 볼베어링이나 제8482.20 소호의 물품 중 외경 100mm 이하인 원추형 롤러베어링과 제8482.40 소호 및 제8482.50 소호에 포함되는 모든 롤러베어링이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품목분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물품은 HTSUS 제8482.20.0020호와 제8482.20.0030호에서 언급한 휠 허브 유닛(wheel hub unit)으로, 휠 허브 어셈블리, 휠 허브 베어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승용자동차와 화물차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브레이크 드럼과 구동축 사이에 위치해 자동차 바퀴를 차축에 연결해 차축의 구동에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을 말한다.

휠 허브 유닛은 크게 3개의 구성부품(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원통형의 허브, 바퀴의 회전을 부드럽게 해주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 휠과 허브를 고착시키기 위한 플랜지)으로 이뤄진다. 이 중 플랜지는 사실상 제8483호의 베어링하우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관점에서 대부분 완성된 휠 허브 유닛이 제8482호에 분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WCO HS위원회는 2018년 9월, 제62차 회기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8708호에 분류한 바 있다.

● WCO HS 위원회에서 제8708.50호로 분류한 2종의 베어링 허브 유닛 ●



□ 제85류 물품(수입조정 대상 38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1.3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01.3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2-1000 8501.32-2000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3-1000 8501.33-2010 8501.33-2090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34-1000 8501.34-2000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8501.40-1000 8501.40-2000 8501.40-3000 8501.40-4000
8501.5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501.51-0000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52-1000 8501.52-9000
8501.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07.10-0000
<생략>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8507.60-2000 8507.60-3000 8507.60-9000
<생략>					
8507.90			부분품		
	40		- 연산축전지의 것	ex ex	8507.90-1000 8507.90-9000
	80		- 기타	ex ex	8507.90-1000 8507.90-9000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시동용 전기기기 … <후략>		
8511.10	00	00	점화플러그		8511.10-1000 8511.10-2000 8511.10-9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11.20	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8511.20-1000 8511.20-9000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00	40	- 배전기	ex ex	8511.30-1000 8511.30-9000
	00	80	- 점화코일	ex ex	8511.30-1000 8511.30-9000
8511.40	0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8511.40-1000 8511.40-2000 8511.40-9000
8511.50	00		그 밖의 발전기		8511.50-1000 8511.50-9000
8511.80			그 밖의 기기		
			- Cut-out 릴레이가 장착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20		-- 6볼트, 12볼트 또는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ex	8511.80-9000
	40		-- 기타		
	60		- 기타	ex ex	8511.80-1000 8511.80-9000
8511.90			부분품		
			- Cut-out 릴레이가 장착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의 것		
	20		-- 6볼트, 12볼트 또는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40		-- 기타		
	60		- 기타		
		20	-- 분배기 접점(차단기 포인트) 세트	ex ex	8511.90-1000 8511.90-9000
		40	-- 기타	ex ex	8511.90-1000 8511.90-9000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윈드쉴드와이퍼, 제 상기, 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20		- 조명용 기구		8512.20-1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12.20-1090
	40	- 시각신호용 기기		8512.20-2010 8512.20-2090
8512.30	00	음향신호용 기구		8512.30-0000
8512.40		윈드실드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20	- 제상기, 제무기		8512.40-0000
	40	- 윈드실드와이퍼		
8512.90		부분품		
	20	- 신호용 기기의 것	ex	8512.90-0000
		- 조명용 기기의 것		
	40	-- 자전거용의 것		
	60	-- 기타	ex	8512.90-0000
	70	- 제상기와 제무기의 것	ex	8512.90-0000
<생략>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20	-- 자동차에만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ex	8519.81-2000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 <후략>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0	- 트랜시버		
	10	-- 시티즌 밴드(CB)	ex	8525.60-900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 <후략>		
8527.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527.21-1000 8527.21-2010 8527.21-2090 8527.21-3010 8527.21-3090 8527.21-9010 8527.21-909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27.29			- 기타		8527.29-000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 <후략>		
8536.4			계전기(繼電器)		
8536.41	00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05	-- Automotive signalling flasher	ex	8536.41-0000
<생략>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 <후략>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3000 8537.10-4000 8537.10-5010 8537.10-5020 8537.10-5090
8537.2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537.20-3000 8537.20-4000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10	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 15.25cm 미만		
		1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용의 것	ex	8539.10-0000
		30	-- 기타		
			- 15.25cm 이상		
		5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용의 것	ex	8539.10-0000
		60	-- 기타		
8544			절연 전선,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 <후략>		
8544.30	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 <후략>		8544.30-0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모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차량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동용 모터다. 자동차의 배터리에서는 당연히 직류전압이 출력되지만 자동차의 구동용 전기모터는 일반적으로 직류모터가 아닌 다상의 교류모터를 사용한다. 직류모터에 비해 효율성이나 출력 및 내구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배터리로부터 출력되는 직류전원을 교류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인버터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HSK는 이러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해 제8501.5 소호의 10단위 레벨에서 전기차용 모터를 특개하고 있다. 미국의 포고문은 교류모터뿐만 아니라 출력 750와트를 초과하는 직류모터까지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직류모터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 내부의 전력네트워크를 사용해 자동차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대부분의 모터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윈도우 모터, 사이드미러 개폐, 선루프나 트렁크 개폐 및 자동차 시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기 위한 펌프나 공조시스템에서 에어컨이나 송풍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터는 대부분 출력이 낮은 직류모터나 교류모터를 사용하는데 미국의 포고문상으로는 이러한 소형 직류모터를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모터 이외에도 자동차에는 다양한 전기적 부품이 내장되며, 포고문은 제8507호의 배터리, 제8511호의 내연기관 시동용 기기, 제8512호의 신호용 기기, 제8539호의 램프 유닛, 제8544호의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등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품목분류 관점에서 다소 모호해 보이는 물품은 HTSUS 제8511.80.2000호와 제8511.80.4000호에서 언급한 컷아웃 릴레이를 갖춘 전압전류조정기(Voltage and voltage-current regulators with cut-out relays)다.

전압전류조정기는 통상 자동차의 발전기와 연동해 사용되는 것으로 발전기가 생성하는 전압과 전류를 조절해 자동차의 전기시스템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전압이 목표수준을 벗어나면 레귤레이터는 발전기의 자화전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력전압을 조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고문에서 언급한 Regulator는 제9032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87류 물품(수입조정 대상 33개¹⁾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또는 제8704호 차량의 것		
	03	--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의 것	ex	8706.00-4000
	05	-- 기타	ex ex	8706.00-1000 8706.00-2000 8706.00-4000
	15	- 제8703호 차량의 것		8706.00-3000
	25	- 제8705호 차량의 것		8706.00-5000
<생략>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0000 8707.90-1000 8707.90-2000 8707.90-3000 8707.90-4000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30	- 완충기	ex	8708.10-0000
	60	- 완충기의 부분품	ex	8708.10-0000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00	- 안전벨트		8708.21-0000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708.22-0000
8708.29		- 기타		8708.29-0000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1000 8708.30-2000 8708.30-3000

1) 포고문 10908의 부속서상으로는 제87류의 자동차 부분품 중 수입조정 대상이 되는 HTSUS 코드를 33개 지정하고 있으나 코드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리스트에서 HS 4단위인 제8707호 전체를 지정함과 동시에 제8707호 내 HTSUS 10단위 코드 6개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어 이들 코드가 중복 표시되는 오류가 있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8.30-9000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기어박스			
	11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 차량의 것	ex		8708.40-0000
<생략>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기타 트랙터(로드 트랙터 제외)			
		-- 기타			
	70	--- 주철제의 것	ex		8708.40-0000
	75	--- 기타	ex		8708.40-0000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1000 8708.50-2000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8.70-0000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8708.80-0000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91-0000
<생략>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생략>					
		-- 기타 차량용			
	60	--- 클러치	ex		8708.93-0000
	75	--- 기타	ex		8708.93-0000
8708.94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708.94-0000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1000 8708.95-9000
8708.99		- 기타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부분품			
<생략>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기타 트랙터의 부분품(로드 트랙터 제외)		
<생략>				
		-- 기타		
	53	--- 주철제의 것	ex ex ex ex ex ex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 기타		
	55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물품	ex ex ex ex ex ex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58	---- 볼베어링을 갖춘 휠 허브 유닛으로 이중 플랜지를 장착한 것	ex ex ex ex ex ex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 기타		
	68	----- 파워트레인용 기타 부분품	ex ex ex ex ex ex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생략>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90		부분품		
	10	- 농장용 왜건과 카트의 부분품		
	30	- 제8302호에 해당하지 않는 카스터		
	50	- 기타	ex ex	8716.90-1000 8716.90-9000

제87류에서 완성된 차량이 아닌 차량의 부품 또는 부속품이 분류되는 호는 제8706호, 제8707호, 제8708호 및 제8714호다. 포고문은 이 중에서 제8707호 전체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8706호와 제8708호의 경우 소형의 트랙터나 농업용 트랙터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새시와 부분품을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통관단계에서는 자동차부품이 수입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부분 품목 분류상 HS 제870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바닥용 매트를 들 수 있다.

●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바닥용 매트 of 품목분류 사례 ●

구분	우리나라 사례	미국 사례
결정번호 및 결정일	품목분류4과-4444 (2024.7.12.)	NY N307817 (2019.12.6.)
품명	CAR MAT-GENERAL 5D NEW CAPTIVA 32	4 Count Vehicle Floor Mat Set
물품 설명	노출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 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부직포 시트가 적층된 특정 형상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보조매트	4 Count Vehicle Floor Mat Set sells as one unit containing four mats; two for the rear floor board and two for the front floor board of a vehicle. The mats are constructed of PVC vinyl.
분류 결과	제3926.90-9000호	제8708.99.8180호
관련 이미지 (유사물품)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제9032.89호(수입조정 비대상)로 분류한 자동차용 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미국은 제8537.10호(수입조정 대상)로 분류하는 등 품목분류 쟁점에 따라 수입 조정 여부가 결정되는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당 부품이 수입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CBP Ruling)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 밖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015		토지측량기기, 수로측량기기, 해양측량기기 ... <후략>	
9015.10		거리측정기	9015.10-0000
9029		적산(積算)회전계, 생산량계, 택시미터 ... <후략>	
9029.10		적산(積算)회전계, 생산량계, 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9029.10-1000 9029.10-2000 9029.10-9000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20	자전거용 속도계	
	40	기타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40	-- 민간항공기용	
	80	-- 기타	9029.20-1010 9029.20-1090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20	00	차량용 의자	9401.20-0000

그 밖에도 포고문은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차량용 의자 등을 수입조정 대상 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3. 미 수입조정 대상 중대형 차량·부품 및 버스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에서 미국은 중·대형차(MHDV, Medium and Heavy-Duty Vehicle)와 그 관련 부품은 병력, 무기 체계, 지상 방어 차량 및 주요 보급품의 수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쟁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안보를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의 이들 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정의된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및 10단위 기준으로 21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물품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로드 트랙터, 대형 픽업트럭, 박스 트럭 등 중·대형 차량 25개 품목 : 25% 관세 부과
 ② 엔진, 변속기, 타이어, 새시 등 중·대형차용 주요 부품 182개 품목 : 25% 관세 부과
 ③ 버스, 대중교통 버스, 대형 코치 등을 포함한 버스 제품군 10개 품목 : 10% 관세 부과

구체적인 수입조정 대상 물품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형 차량(Medium and Heavy Duty Vehicle)(수입조정 대상 2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2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1	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1.21-1000 8701.21-2000
8701.22	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2-1000 8701.22-2000
8701.23	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3-1000 8701.23-2000
8701.24	0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1.24-1000 8701.24-2000
8701.29	00	- 기타	8701.29-1000 8701.29-2000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 캡 새시(Cab chassis)	8704.10-0000
	50	- 기타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11	-- 캡 새시(Cab chassis)	8704.22-1011 8704.22-1012 8704.22-1091 8704.22-1092 8704.22-9010
	51	-- 기타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4.22-9020 8704.22-9090	
8704.23	01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23-1010 8704.23-1020 8704.23-9010 8704.23-9020 8704.23-9090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01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32-1010 8704.32-1020 8704.32-9010 8704.32-9020 8704.32-9090	
8704.4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42	00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42-1010 8704.42-1020 8704.42-9010 8704.42-9020 8704.42-9090	
8704.43	00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43-1010 8704.43-1020 8704.43-9010 8704.43-9020 8704.43-9090	
8704.5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52	00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52-1010 8704.52-1020 8704.52-9010 8704.52-9020 8704.52-9090	
8704.60	00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60-1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4.60-1020 8704.60-9010 8704.60-9020 8704.60-9090
8704.90	01		기타		8704.90-1010 8704.90-1020 8704.90-9010 8704.90-9020 8704.90-909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생략>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705.40-0000
8705.90	00		기타		
		10	- 이동방사선차		
		20	- 이동 진료차		
		80	- 기타	ex	8705.90-1010 8705.90-1020 8705.90-9010 8705.90-9020 8705.90-9030 8705.90-9040 8705.90-9060 8705.90-9070 8705.90-9090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나 제8704호의 것		
	03		-- 소호 제8704.21호나 제8704.31호의 것	ex	8706.00-4000
	05		-- 기타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또는 제8701.29호의 것	ex	8706.00-1000
		40	--- 제8702호의 것		
		75	--- 제8704호의 것	ex	8706.00-4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15	- 제8703호의 것		
	25	- 제8705호의 것		8706.00-5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3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기타	ex	8706.00-100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		- 전기식의 것		8709.11-0000
8709.19		- 기타		8709.19-0000

중대형 차량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호 제8701.2호에 포함되는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Road tractor)다. 로드 트랙터는 스스로 화물을 싣는 일반 트럭과 달리, 뒤에 트레일러(Trailer)를 연결해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특수 구동 차량을 말한다.

물류 현장에서는 일반 화물트럭(제8704호)보다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조합이 선호된다. 일체형 트럭은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차량이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이 큰 반면, 트랙터는 짐이 실린 세미트레일러를 현장에 떼어놓고 즉시 미리 상차된 다른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행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 밖에도 하나의 트랙터로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트레일러의 적재량이 보통의 일체형 화물차보다 많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그림에서 왼쪽 사진이 수입조정 대상인 로드 트랙터이고 오른쪽 사진은 로드 트랙터가 세미트레일러를 결합해 운송 중인 사례다. 트랙터에 결합된 세미트레일러는 자동차 또는 중대형 자동차 수입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알루미늄과 철강제품 수입조정 대상에는 포함된다.

● 로드 트랙터(좌, 수입조정 대상) & 세미트레일러가 결합된 트랙터(우) ●



제8701호에는 로드 트랙터 이외에 농업용, 임업용, 토목건설용의 다양한 트랙터가 분류된다. 로드 트랙터를 제외한 나머지 트랙터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다.

● 다목적 농업용 트랙터(수입조정 비대상) ●



그 밖에 제8704호의 화물차 중 소호 제8704.10호의 덤프와 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또한 제8705호에서는 특수용도차 중 화물 수송과 관련 있는 콘크리트 믹서차 등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2) 중대형 차량의 부품(수입조정 대상 182개 코드)

□ 제40류~제83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2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 <후략>		
4009.1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1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용의 브레이크 호스	ex	4009.12-0000
		50	-- 기타		
4009.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2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용의 브레이크 호스	ex	4009.22-0000
<생략>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3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용의 브레이크 호스	ex	4009.32-0000
<생략>					
4009.4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4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	ex	4009.42-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 용의 브레이크 호스		
<생략>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0	- Radial 구조의 것		
	50	- 기타		4011.10-2000 4011.10-9000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10	- Radial 구조의 것		
		-- 고속도로용의 것		
	05	--- 경량 트럭		
	15	--- 기타	ex ex	4011.20-1010 4011.20-1090
		-- 비고속도로용의 것		
	25	--- 직경 40.6cm 이상인 림(rim)에 사용하기 위 한 것	ex ex	4011.20-1010 4011.20-1090
	35	--- 기타	ex	4011.20-1010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하 다) … <후략>		
4012.1		재생타이어		
<생략>				
4012.19		- 기타		
	20	-- 소호 제8701.91.10호, 제8701.92.10호 제8701. 93.10호, 제8701.94.10호, 제8701.95.10호의 트랙터 또는 제84류와 제8716.80.10호의 농업 용·원예용 기계나 도구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 기타		
	40	--- Radial 구조의 것	ex	4012.19-0000
	80	--- 기타	ex	4012.19-0000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생략>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기타		
	60		--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트랙터를 포함한다)이나 제8705호 차량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ex ex ex	4012.20-9010 4012.20-9020 4012.20-9090
<생략>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4013.10-1000 4013.10-2000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생략>					
4016.99			- 기타		
<생략>					
	60		-- 기타		
		10	--- 자동차의 기계적 부품	ex	4016.99-900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2			접합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1		-- 윈드실드(windshield)		
		10	--- 제87류의 자동차용의 것	ex ex	7007.21-1000 7007.21-2000
		90	--- 기타		
	51		-- 기타	ex ex	7007.21-1000 7007.21-200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7009.10-0000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30		-- 총중량이 4톤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용의 것		7320.10-1000 7320.10-2000 7320.10-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60	-- 기타		
	90	- 기타		
7320.20		나선형 스프링		
	10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ex	7320.20-1000
<생략>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 <후략>		
8301.20		자동차용 자물쇠		8301.20-0000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후략>		
8302.10		경첩 및 그 부분품		
		- 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30	-- 자동차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ex	8302.10-0000
<생략>				
8302.3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	- 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8302.30-0000
	60	- 기타		

이 그룹에서 언급된 제4009호의 물품(브레이크 호스)은 포고문 10908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경량트럭용 부분품과도 겹친다. 즉, 브레이크 호스는 소형 자동차용이든 중대형 자동차용이든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라는 의미다.

제4011호에는 신품인 고무제의 공기타이어가 분류되고 제4012호에는 중고품이나 재생품인 타이어가 분류된다. 수입조정 대상에 있어서는 신품 타이어와 재생 타이어의 기준이 다른데, 제4011호 타이어는 버스, 승용차, 화물차의 것, 즉 제8702호, 제8703호 및 제8704호 차량의 것이 수입조정 대상인 반면, 제4012호의 타이어는 이들 차량과 항공기용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타이어만 적용된다. 이는 포고문 10908에서 규정한 기준과도 대체로 유사하다.

제7007호에는 자동차·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포고문 10908은 접합안전유리 중에서도 HTSUS 제7007.21.11호의 'Windshield'를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포고문 10984는 Windshield를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제84류~제85류, 제90류 및 제94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86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3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4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지 않는 것			
	05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하기 위한 것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14	---- 중고 또는 재생	ex	8407.34-9000	
	18	---- 기타	ex	8407.34-9000	
	25	--- 기타	ex	8407.34-1000	
			ex	8407.34-9000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5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하기 위한 것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44	---- 중고 또는 재생	ex	8407.34-9000	
	48	---- 기타	ex	8407.34-9000	
	55	--- 기타	ex	8407.34-1000	
			ex	8407.34-9000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ex ex ex ex	8408.20-1000 8408.20-2000 8408.20-3000 8408.20-4000 8408.20-5000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09.9		기타(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것)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10	-- 주철부품[세척(Cleaning) 공정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Fin, 게이트, 스프루, 라이저를 제거하거나 마감 가공기계에 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계 가공된 것]		
	4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8409.91-1000
<생략>				
8409.99		- 기타		
	10	-- 주철부품[세척(Cleaning) 공정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Fin, 게이트, 스프루, 라이저를 제거하거나 마감 가공기계에 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계 가공된 것]		
	4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8409.99-700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10	- 압축점화식 엔진용의 연료분사펌프		8413.30-1000
	90	- 기타		8413.30-2000 8413.30-3000 8413.30-4000 8413.30-9000
8413.9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10	-- 압축점화식 엔진용의 연료분사펌프의 것	ex	8413.91-2000
	20	-- 펄프 및 종이 제조용의 스톱펌프의 것		
	90	-- 기타		
	10	--- 제8413.30.90호의 것	ex	8413.91-2000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 <후략>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40	- 1/4 마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			
	80	- 기타			
		-- 스크루 타입			
		-- 기타			
		--- 암모니아를 제외한 모든 냉매용의 것			
	30	---- 자동차용의 것	ex ex	8414.30-1000 8414.30-2000	
<생략>					
8414.5		팬(Fan)			
8414.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 … <후략>			
8414.59		- 기타			
	10	-- 파이프 오르간용 블로워			
	15	-- 마이크로 프로세서, 통신장비, 자동자료처리기 계를 냉각시키기 위한 것			
		-- 기타			
	30	--- 터보차저와 수퍼차저	ex	8414.59-9000	
	65	--- 기타			
	40	---- 자동차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	ex	8414.59-9000	
<생략>					
8414.80		기타			
		- 기체압축기			
	05 00	-- 터보차저와 수퍼차저	ex ex ex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생략>					
8415		공기조절기 … <후략>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415.20-000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 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21.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3-1000 8421.23-2000 8421.23-9000
8421.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2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 ... <후략>		8421.32-0000
8425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 ... <후략>		
8425.4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8425.42		- 그 밖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으로 한정한다)		
8425.49		- 기타		8425.49-1000 8425.49-2000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 <후략>		
8426.9		기타		
8426.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426.91-0000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10	- 제8425.11호 또는 제8425.19호 기계의 것		
	90	- 기타	ex	8431.10-0000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10	- 샤프트 일체형 볼베어링	ex ex	8482.10-2000 8482.10-9000
	50	- 기타		
	04	-- 비연삭 베어링		
		-- 기타		
		--- Radial 베어링		
		---- 단열(single row) 베어링		
	32	----- 최대 부하 베어링(maximum or full capacity type)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기타 베어링		
	36	----- 직경 9mm 미만의 것		
	44	----- 직경 9mm 이상 30mm 이하의 것	ex ex	8482.10-2000 8482.10-9000
	48	----- 직경 30mm 초과 52mm 이하의 것	ex ex	8482.10-2000 8482.10-9000
<생략>				
8482.20	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것 포함]		
		- 세트 상태로 제시된 컵과 콘 어셈블리		
		-- 휠 허브 유닛		
	20	--- 플랜지가 결합된 것	ex	8482.20-0000
	30	--- 기타	ex	8482.20-0000
		-- 기타		
	4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6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 별도로 제시된 콘 어셈블리		
	7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8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8482.40	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40-0000
8482.50	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0000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1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및 로터리식 내연기관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8483.10-9010 8483.10-9090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3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20	--- 750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32-1000
		--- 기타		
	45	---- 제8703.40호 내지 제8703.80호의 자동차의 주된 동력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전기 모터		
	55	---- 기타		
	20	----- 민항기용의 것		
	40	----- 기타	ex	8501.32-1000
	61	-- 발전기		8501.32-2000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20	--- 75킬로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미만인 것		
	40	---- 민항기용의 것		
	80	---- 기타	ex	8501.33-1000
	30	--- 149.2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33-1000
	40	--- 기타	ex	8501.33-1000
	61	-- 발전기		8501.33-2010 8501.33-2090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30	-- 전동기		8501.34-1000
	61	-- 발전기		8501.34-2000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20	- 출력이 37.5와트 초과 74.6와트 이하인 것	ex	8501.40-1000
	40	- 출력이 74.6와트 초과 735와트 이하인 것	ex ex	8501.40-1000 8501.40-2000
	50	- 출력이 735와트 초과 746와트 미만인 것	ex	8501.40-2000
	60	- 기타	ex	8501.40-2000 8501.40-3000 8501.40-4000
8501.5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20	-- 37.5와트 초과 74.6와트 이하인 것			8501.51-0000
	40	-- 74.6와트 초과 735와트 이하인 것			
	50	-- 735와트 초과 746와트 미만인 것			
	60	-- 기타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0	-- 750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52-9000
	80	-- 기타			
	20	--- 민항기용의 것			
	40	--- 기타	ex		8501.52-1000 8501.52-900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 지에 상관없다)			
8507.10	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07.10-0000
<생략>					
8507.90		부분품			
	40	- 연산축전지의 것	ex ex		8507.90-1000 8507.90-9000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 … <후략>			
8511.10		점화플러그			8511.10-1000 8511.10-2000 8511.10-9000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8511.20-1000 8511.20-9000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8511.30-1000 8511.30-9000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8511.40-1000 8511.40-2000 8511.40-9000
8511.50		그 밖의 발전기			8511.50-1000 8511.50-9000
8511.80		그 밖의 기기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컷아웃 릴레이가 포함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20	-- 6, 12,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ex ex	8511.80-1000 8511.80-9000
	40	-- 기타		
	60	- 기타	ex ex	8511.80-1000 8511.80-9000
8511.90		부분품		
		- 컷아웃 릴레이가 포함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용의 것		
	20	-- 6, 12,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40	-- 기타		
	60	- 기타 부분품	ex ex	8511.90-1000 8511.90-9000
8512		자전거나 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 <후략>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20	- 조명용 기구		8512.20-1010 8512.20-1090
	40	- 시각 신호용 기기		8512.20-2010 8512.20-2090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8512.30-0000
8512.40		윈드실드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20	- 제상기와 제무기		8512.40-0000
	30	- 윈드실드 와이퍼		
8512.90		부분품		
	20	- 신호용 기기의 것	ex	8512.90-0000
		- 조명용 기기의 것		
	40	-- 자전거용의 것		
	60	-- 기타	ex	8512.90-0000
	70	- 제상기와 제무기의 것	ex	8512.90-0000
	90	- 기타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19.8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음성재생만 하는 것			
		---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20	---- 자동차에만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ex	8519.81-2000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 <후략>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0	- 트랜시버			
	10	-- 시티즌 밴드(CB)	ex	8525.60-900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8527.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라디오와 테이프 플레이어가 결합된 것			
	15	--- 디지털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RDS) 신호의 수신 및 디코딩이 가능한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와 결합된 것	ex ex ex	8527.21-1000 8527.21-3010 8527.21-3090	
	25	--- 기타	ex ex ex	8527.21-1000 8527.21-3010 8527.21-3090	
	40	-- 기타	ex ex	8527.21-2010 8527.21-2090 8527.21-3010 8527.21-3090 8527.21-9010 8527.21-9090	
8527.29		- 기타			
	40	-- FM 또는 AM/FM만 가능한 것	ex	8527.29-000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 <후략>			
8536.4		계전기			
8536.41	00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05	-- 자동차 신호용 점멸기	ex	8536.4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10	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 15.24cm 미만의 것		
	1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용의 것	ex	8539.10-0000
	30	-- 기타		
		- 15.25cm 이상		
	5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용의 것	ex	8539.10-0000
8544		절연전선,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 <후략>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544.30-0000
9029.10		적산(積算)회전계, 생산량계, 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0	- 택시미터		
	80	- 기타	ex	9029.10-1000 9029.10-2000 9029.10-9000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20	- 자전거용 속도계		
	40	- 기타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40	-- 민간항공기용		
	80	-- 기타		9029.20-1010 9029.20-1090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20		차량용 의자		9401.20-0000

□ 제87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7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나 제8704호 차량용의 것		
	03	--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 차량용의 것	ex	8706.00-4000
	05	-- 기타	ex	8706.00-1000
			ex	8706.00-2000
				8706.00-4000
	15	- 제8703호 차량용의 것		8706.00-3000
	25	- 제8705호 차량용의 것		8706.00-500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		
8707.90		기타		
	1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기타		
	2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5호 차량의 것	ex	8707.90-1000
	40	-- 제8702호 차량의 것		
	60	-- 제8704호 차량의 것		8707.90-3000
	80	-- 제8705호 차량의 것		8707.90-4000
	90	-- 기타 차량의 것	ex	8707.90-1000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30	- 범퍼		8708.10-0000
	60	- 범퍼의 부분품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8708.21-0000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708.22-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8.29		- 기타		
	15	-- 도어 어셈블리	ex	8708.29-0000
		-- 스탬핑한 차체		
	21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25	--- 기타	ex	8708.29-0000
	51	-- 기타	ex	8708.29-0000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10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ex	8708.30-1000
	90	-- 기타		
	50	- 그 밖의 차량의 것	ex ex ex ex	8708.30-1000 8708.30-2000 8708.30-3000 8708.30-9000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기어박스		
	11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차량용의 것		8708.40-0000
	3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 부분품		
	6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 기타		
	70	--- 주철제의 것		
	75	--- 기타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11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31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ex ex	8708.50-1000 8708.50-2000
	51	-- 제8703호 차량용의 것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61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 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ex ex	8708.50-1000 8708.50-2000
	65	--- 비구동차축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부분품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7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7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제8703호 차량의 것		
	79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 기타		
	81	---- 주철제의 것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기타		
	85	----- 반축(half-shaft)	ex ex	8708.50-1000 8708.50-2000
	89	----- 기타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그 밖의 차량의 것		
	91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기타		
	93	---- 주철제의 것	ex ex	8708.50-1000 8708.50-2000
		---- 기타		
	95	----- 반축(half-shaft)	ex	8708.50-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ex	8708.50-2000
	99	----- 기타	ex	8708.50-1000
			ex	8708.50-2000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05	--- 로드 휠	ex	8708.70-0000
	15	--- 부분품 및 부속품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25	--- 로드 휠	ex	8708.70-0000
	35	--- 부분품 및 부속품	ex	8708.70-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45	-- 로드 휠	ex	8708.70-0000
	60	-- 부분품 및 부속품	ex	8708.70-0000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 [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 그 밖의 차량의 것		
	13	--- 맥퍼슨 스트럿	ex	8708.80-0000
	16	--- 기타	ex	8708.80-0000
		- 부분품		
	51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5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80-0000
		-- 기타		
	60	--- 주철제의 것	ex	8708.80-0000
	65	--- 기타	ex	8708.80-0000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라디에이터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50	--- 그 밖의 차량의 것	ex	8708.91-0000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1-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70	---- 주철제의 것	ex	8708.91-0000
	75	---- 기타	ex	8708.91-0000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2-0000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60	--- 클러치	ex	8708.93-0000
	75	--- 기타	ex	8708.93-0000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ex	8708.94-0000
	5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ex	8708.94-0000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4-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70	---- 주철제의 것	ex	8708.94-0000
	75	---- 기타	ex	8708.94-0000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05	-- 에어백용 팽창기와 모듈	ex	8708.95-9000
		-- 기타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1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ex	8708.95-1000 8708.95-9000
	2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ex ex	8708.95-1000 8708.95-9000
8708.99		- 기타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부분품		
	03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ex	8708.99-1010 8708.99-9000
	06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유닛	ex ex	8708.99-1010 8708.99-9000
	16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23	--- 기타	ex ex	8708.99-1010 8708.99-9000
		-- 그 밖의 트랙터의 부분품(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27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ex	8708.99-1010 8708.99-9000
	31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휠허브 유닛	ex ex	8708.99-1010 8708.99-9000
	41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ex ex	8708.99-1010 8708.99-9000
	48	--- 기타		
	10	---- 무한궤도형 트랙터용의 트랙 링크		
	50	---- 기타	ex ex	8708.99-1010 8708.99-9000
		-- 기타		
	53	--- 주철제의 것	ex ex ex ex ex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 기타		
	55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8708.99-9000
	58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휠허브 유닛	ex	8708.99-9000
		---- 기타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68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900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90		부분품		8709.90-0000

제84류~제85류, 제90류 및 제94류에 포함되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포고문 10908과 10984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그룹에 포함되는 자동차부품은 소형차용이든 중대형차용이든 별 차이 없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버스 및 그 밖의 차량(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10-2010 8702.10-2020 8702.10-3010 8702.10-3020
	61	- 기타		8702.10-1010 8702.10-1020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20-1000 8702.20-2000
	61	- 기타		
8702.3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30-1000 8702.30-2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61	- 기타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 작된 것		8702.40-1000 8702.40-2000
	61	- 기타		
8702.90		기타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 작된 것		8702.90-2010 8702.90-2020 8702.90-3010 8702.90-3020
	61	- 기타		
	61	- 기타		8702.90-1010 8702.90-1020

포고문에서는 제8702호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물품을 HTSUS 8단위 기준으로 10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개 코드는 제8702호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코드 수는 무의미하다. 제8702호의 하위 HSK 코드에 포함되는 차량 전부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4. 한 눈에 보는 수입조정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포고문 10908과 10984에 따라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해 국내 HSK 코드상 해당 물품의 내용을 검토했다. 종합하자면 미국은 외국산 완성 자동차의 경우 HS 제87류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외국산 자동차부품은 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5호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까지 추가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완성차와 완성차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품(제8708호의 물품 제외)을 중심으로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포고문 10908 및 10984에 따른 수입조정 대상 물품 ●

구분		제8701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완성차		로드 트랙터	전체	골프용 차와 소형 가솔린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차량	전체	기중기차, 소방차, 이동지료차, 방사선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	해당 없음
부 분 품	가솔린 엔진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디젤엔진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기모터 (구동용)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고무호스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타이어 (신품)		Radial 타이어만 해당	전부 해당됨	Radial 타이어만 해당		
	타이어 (재생)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타이어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이너튜브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차량용 안전유리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방 방풍유리 (Windshiled) 제외

구분		제8701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부 속 품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축전지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시동용 전기기기 등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실드빔 램프유닛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엔진을 갖춘 새시	농업용 트랙터와 소형 트랙터용 제외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차체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전부 해당됨	

IV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구리 및 파생제품

IV | 구리 및 파생제품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조정 조치로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 10962에 서명했다.

이 장에서는 구리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대상물품 상세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구리제품의 HSK 코드 분석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기준으로 80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74류에 포함된다. 제74류에는 구리와 그 합금, 그리고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된다.

제74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크게 다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제7401호부터 제7405호 : 구리의 매트(matte)와 그 밖의 구리 야금(冶金)의 중간제품, 구리의 괴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② 제7406호 : 구리 가루와 플레이크(flake)
 ③ 제7407호부터 제7410호 : 제7403호의 구리(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를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 단조(鍛造)하여 얻어진 물품
 ④ 제7419호 : 그 밖의 제품

위의 첫 번째 그룹은 통상 구리 원료에 해당되는 물품이 포함되며, 광석에서 채취하거나 정제, 합금 또는 웨이스트나 스크랩으로부터의 회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포고문에서 이 그룹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포고문은 제74류에서 위의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제7406호부터 제7409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며 이 범주에서 우리나라의 HSK 기준으로 어느 품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제7406호(수입조정 대상 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7406.10-0000
7406.20	00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		7406.20-1000 7406.20-2000

구리가루는 제시된 상태에서 메시(mesh) 구경이 1mm인 제를 통과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제7406호에 분류된다. 가루는 그 자체로서 다른 구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돼 압축과 소결(燒結)에 의해 베어링(bearing)이나 부싱(bushing)과 그 밖의 많은 기계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화학용이나 야금(冶金)용의 시약, 코팅 및 도금, 도전성 잉크 및 페이스트, 안료, 3D 프린팅 소재로도 사용된다. 제7406호의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며 이 호의 HSK 코드는 모두 3개다.

□ 제7407호와 제7408호(수입조정 대상 2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프로파일			
	15	-- 중공프로파일	ex	7407.10-0000	
	30	-- 기타	ex	7407.10-0000	
	50	- 봉	ex	7407.10-0000	
7407.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프로파일			
	15	--- 중공프로파일	ex	7407.21-0000	
	30	--- 기타	ex	7407.21-0000	
		-- 봉			
	50	--- low fuming 용접봉	ex	7407.21-0000	
		--- 기타			
	70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ex	7407.21-0000	
	90	---- 기타	ex	7407.21-0000	
7407.29		- 기타			
		-- 프로파일			
	16	--- 중공프로파일	ex ex ex ex	7407.29-1000 7407.29-2010 7407.29-2020 7407.29-9000	
		--- 기타			
	34	---- 구리-니켈합금(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ex ex	7407.29-2010 7407.29-2020	
	38	---- 기타	ex ex	7407.29-1000 7407.29-9000	
	40	-- 구리-니켈합금(백동) 또는 구리-니켈-아연합금(양백)으로 만든 봉	ex ex	7407.29-2010 7407.29-2020	
	50	-- 기타의 봉	ex ex	7407.29-1000 7407.29-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8		구리의 선			
7408.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9.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7408.11-0000
	6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ex		7408.11-0000
7408.19	00	- 기타			7408.19-0000
7408.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00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8.21-0000
7408.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1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한 것	ex ex		7408.22-1000 7408.22-2000
	5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하지 않은 것	ex ex		7408.22-1000 7408.22-2000
7408.29		- 기타			
	1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한 것	ex ex		7408.29-1000 7408.29-9000
	50	-- 금속으로 도포 또는 도금하지 않은 것	ex ex		7408.29-1000 7408.29-9000

제7407호에는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이,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wire)’이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전 길이를 통해 횡단면이 균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봉과 선의 차이는 직관적으로는 직경이 굵은지 가는지로 구분되겠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에서는 코일 모양(in coil)인지 여부에 따라 코일상의 것은 선으로, 코일상이 아닌 것은 봉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HSK에서는 이들 호의 물품을 재질(합금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세분하고 있으나 미국의 HTSUS에서는 재질뿐 아니라 용도나 성상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HTSUS 제7407.21.50호는 저연(底煙) 용접봉을 특제하고 있으며, 제7408.22호에서는 선에 추가적인 금속코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8단위에서 세분하고 있다.

● 저연(low fume) 용접봉 ●



□ 제7409호와 제7410호(수입조정 대상 21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 코일 모양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1-1000 7409.11-9000	
	5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11-1000 7409.11-9000	
7409.19		- 기타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9-1000 7409.19-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19-1000 7409.19-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19-1000 7409.19-9000	
7409.2		구리 - 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00	- 코일 모양		7409.21-1000 7409.21-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09.29	00	- 기타			7409.29-1000 7409.29-9000
7409.3		구리 - 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 코일 모양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1-1000 7409.31-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1-1000 7409.31-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31-1000 7409.31-9000
7409.39		- 기타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9-1000 7409.39-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39-1000 7409.39-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39-1000 7409.39-9000
7409.40	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09.40-1010 7409.40-1090 7409.40-2010 7409.40-2090
7409.9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10	-- 두께 5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90-1000 7409.90-9000
		-- 두께 5밀리미터 미만			
	50	--- 폭 500밀리미터 이상	ex ex		7409.90-1000 7409.90-9000
	90	--- 폭 500밀리미터 미만	ex ex		7409.90-1000 7409.90-9000
7410		구리의 박(箔) … <후략>			
7410.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0.11-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0.12	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0.12-0000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0	-- 구리층이 적층된 것	ex ex	7410.21-1000 7410.21-9000
	60	-- 기타	ex ex	7410.21-1000 7410.21-9000
7410.22	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0.22-1000 7410.22-9000

제7409호에는 구리제의 판, 시트나 스트립이, 제7410호에는 구리제의 박(foil)이 분류된다. 판, 시트, 스트립과 박은 균일한 두께를 가지며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평평한 제품을 뜻한다. 구리나 알루미늄은 금과 은 다음으로 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얇은 시트상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트상 물품 중 두께 0.15mm 이하인 것이 제7410호의 박으로 분류된다.

제7409호와 제7410호에서 HTSUS는 HSK에 비해 훨씬 상세하게 세분류돼 있다. 다만, HSK에서는 규정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박을 특제하고 있으나 HTSUS는 이러한 물품을 따로 세분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1호와 제7412호(수입조정 대상 9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10	- 무계목의 것	ex	7411.10-0000
	50	- 기타	ex	7411.10-0000
741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10	-- 무계목의 것	ex	7411.21-0000
	50	-- 기타	ex	7411.21-0000
7411.22	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7411.22-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7411.22-2000
7411.29		- 기타		
	10	-- 무계목의 것	ex ex	7411.29-1000 7411.29-9000
	50	-- 기타	ex ex	7411.29-1000 7411.29-9000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7412.10	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2.10-0000
7412.20	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2.20-0000

제7411호와 제7412호에는 구리제의 관과 관 연결구류가 각각 분류된다. 이들 호의 HTSUS는 HSK에 비해 더 세분화돼 있으며 특히 무계목(seamless) 관을 특제하고 있다. 무계목이란 관 또는 시트의 양끝을 구부린 후 서로 용접해 둥근 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봉상의 물품의 중앙을 천공하거나 용융된 금속을 압출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어 용접 이음매가 없는 관을 말한다. 제7411호와 제7412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3호와 제7415호(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고 제품으로 되지 않은 것		
	10	-- 연선	ex	7413.00-0000
	50	-- 기타	ex	7413.00-0000
	90	- 연결구가 부착되었거나 제품으로 된 것	ex	7413.00-0000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0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1000 7415.10-9000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5.21	00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7415.21-0000
7415.29	00		- 기타		7415.29-0000
7415.3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05		-- 목재용 스크루	ex	7415.33-0000
	10		-- Muntz 메탈 또는 옐로우 메탈	ex	7415.33-0000
	80		-- 기타 스크루, 볼트와 너트	ex	7415.33-0000
7415.39	00		- 기타		7415.39-0000

제7413호와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대표적인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된다. 이들 호의 HTSUS 세분류체계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다만 HTSUS 제7415.33.05호에서 먼츠 메탈(Muntz metal) 또는 옐로우 메탈(yellow metal)로 불리는 구리-아연 합금제의 스크루, 볼트와 너트가 특개돼 있다. 제7414호와 제7415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7418호와 제7419호(수입조정 대상 1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후략>		
7418.10	0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418.10-1000 7418.10-9010 7418.10-9020 7418.10-9030 7418.10-9091 7418.10-9099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0		- 구리-아연 합금(황동)의 것	ex ex	7418.20-1000 7418.20-2000
	50		- 기타	ex ex	7418.20-1000 7418.20-2000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7419.20	00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20-0000
7419.80		- 기타			
		--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그릴, 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 클로스(cloth)			
	03	---- 종이 제조용 기계에 사용하기 적합한 장망 초기지 와이어	ex		7419.80-1010
	06	---- 기타	ex		7419.80-1010
	09	--- 기타			7419.80-1090
	15	-- 사람이 포켓이나 핸드백에 휴대하기 적합한 종류의 용기	ex		7419.80-9000
	16	-- 구리 스프링			7419.80-2000
	17	-- 체인과 그 부분품	ex		7419.80-9000
		-- 기타			
	30	---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ex		7419.80-9000
	50	--- 기타	ex		7419.80-9000

제7418호에는 구리로 만든 주방용품, 식탁용품, 가정용품 등이 분류되며, 제7419호에는 제74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구리제품이 분류된다. 제7419호에는 구리제의 일부 범용성 부분품(체인, 스프링 등)도 포함된다. 이들 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 제8544호(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544		절연전선,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 <후략>			
<생략>					
8544.4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10	-- 모듈화된 전화기용 접속자가 부착된 것	ex ex ex	8544.42-1010 8544.42-2010 8544.42-9010	
		-- 기타			
	20	--- 전기통신용의 것	ex ex ex	8544.42-1010 8544.42-2010 8544.42-9010	
	90	--- 기타		8544.42-1090 8544.42-2090 8544.42-9090	
8544.49		- 기타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10	--- 전기통신용의 것		8544.49-1011 8544.49-2011 8544.49-9011	
<생략>					

제8544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과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절연도체[편조(braid)·스트립(strip)·봉(bar) 등]가 분류된다. 도체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는 구리이며, 제8544호에 분류되는 개별 물품 중 구리의 함량이 가장 높은 물품은 아마도 제8544.11호의 구리제 권선용 와이어(winding wire)일 것이다. 그러나 권선용 와이어는 특이하게도 포고문상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리제의 권선용 와이어(HS 제8544.11호) ●



제8544호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물품은 소호 제8544.42호(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도체로 접속자가 부착된 것)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과 소호 제8544.49호(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도체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것)의 물품 중 전기통신용의 것(전압 80볼트 이하)만 해당된다.



V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목재 및 목제가구

V | 목재 및 목재가구

1. 개요 및 경과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연질 목재 및 특정의 목재가구류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 10962에 서명했다.

포고문에서 미국은 현재의 목재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재 공장의 지속적인 폐쇄 위협과 목재제품 공급망의 혼란이 발생하고 미국 내 목재 산업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목재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정의된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및 10단위 기준으로 22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물품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연질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15개 품목 : 10%의 관세 부과
- ② 속을 덧댄 목재 의자 4개 품목 : 25%의 관세 부과(2026.1.1.부터 3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상 1년 연기)
- ③ 그 밖의 목제가구 및 부분품 3개 품목 : 25%의 관세 부과(2026.1.1.부터 5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상 1년 연기)

그러나 이 품목군에 부과되는 추가관세와 무관하게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10%, EU와 일본은 15%의 관세상한선을 적용받는다. 이는 2025년 5월 미국과 영국 간 체결된 '경제 번영 협약(Economic Prosperity Deal)' 등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미 수입조정 대상 목재 및 목제가구류의 HSK 코드 분석

□ 연질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수입조정 대상 15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3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00	- 침엽수류		4403.11-0000
<생략>				
4403.2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0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1-1000 4403.21-2000 4403.21-9000
4403.22	0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3.22-1000 4403.22-2000 4403.22-9000
4403.23	01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1000 4403.23-2000
4403.24	01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3.24-1000 4403.24-2000
4403.25	01	- 기타(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1000 4403.25-2010 4403.25-202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3.25-2090 4403.25-4000 4403.25-5000 4403.25-9000
4403.26	01		- 기타		4403.26-1000 4403.26-2010 4403.26-2020 4403.26-2090 4403.26-4000 4403.26-5000 4403.26-9000
<생략>					
4403.9			기타		
<생략>					
4403.99	01		- 기타		4403.99-1010 4403.99-1020 4403.99-1040 4403.99-1050 4403.99-1090 4403.99-2000 4403.99-3030 4403.99-3040 4403.99-3060 4403.99-4000 4403.99-9000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1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00		- 침엽수류		4406.11-0000
<생략>					
4406.9			기타		
4406.91	00		- 침엽수류		4406.91-000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			침엽수류		
4407.11	00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		4407.11-101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407.11-1020 4407.11-1090 4407.11-2000 4407.11-9000
4407.12	00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	4407.12-1000 4407.12-2010 4407.12-2020 4407.12-2090
4407.13	00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3-1000 4407.13-2000 4407.13-9000
4407.14	00	-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 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4407.14-0000
4407.19	00	- 기타	4407.19-1000 4407.19-2010 4407.19-2020 4407.19-2090 4407.19-3000 4407.19-4000 4407.19-5000 4407.19-9000

일반적으로 제44류는 목재의 가공 또는 제조단계에 따라 4단위 호를 배열하고 동일한 4단위 호 내에서는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를 기준으로 6단위 소호 체계가 대분류된다.

영어표현으로 활엽수와 침엽수는 각각 ‘broad leaf tree’와 ‘needle leaf tree’로 불리기도 하지만, 목재의 결이 일반적으로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활엽수를 ‘hardwood’, 침엽수를 ‘softwood’라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포고문 제목에서 말한 연질목재(softwood)는 바로 이 침엽수 목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HS 품목분류표에서는 침엽수를 ‘Coniferous’로, 활엽수를 ‘기타(other)’로 구분한다. 그리고 일부 호에서는 활엽수를 다시 열대산 목재(tropical woods)와 기타(other)로 세분하기도 한다.

미국의 포고문은 제4403호(원목), 제4406호 및 제4407호의 모든 침엽수 목재를 수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서 6단위 소호 기준으로 침엽수 종류는 총 14개이며 이들 소호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3호에는 원목, 즉 벌채 상태의 통나무가 분류된다. 소호 제4403.1호에 해당하는 모든

침엽수종 원목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소호 제4403.2호의 열대산 원목은 수입조정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활엽수 중 소호 제4403.99호¹⁾에 분류되는 원목만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6호에는 철도나 궤도의 받침목(railway sleeper)이 분류되며, 이 중 침엽수로 만든 받침목이 분류되는 소호 제4406.11호와 제4406.91호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제4407호에는 보통 제4403호에 분류되는 원목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일정한 방향이나 길이 또는 두께로 절단한 간단한 형상의 목자재가 분류된다. 이중 침엽수에 해당하는 소호 제4407.1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 제4403호부터 제4407호에 해당하는 국내산 목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은 소호 제4407.19호(기타의 침엽수 제재목)뿐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조정 조치가 우리나라의 미국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속을 덧댄(upholstered) 목제 의자(수입조정 대상 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생략>					
9401.6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upholstered)			
		-- 의자(chairs) ²⁾			
	20	--- 티크목의 것(of teak)			
	40	--- 기타			
	01	---- 어린이용 의자, 높이를 높인 것(highchair)을 포함한다			
	11	---- 그 밖의 가정용의 것(household)	ex ex	9401.61-1000 9401.61-9000	
	31	---- 기타	ex ex	9401.61-1000 9401.61-9000	
	60	-- 기타			

1) 제44류 해설서 부속서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엽수가 포함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01	--- 고정형 놀이대(stationary activity center)			
		05	--- 그 밖의 어린이용 의자(seat)			
		11	--- 그 밖의 가정용의 것(household)		ex ex	9401.61-1000 9401.61-9000
		31	--- 기타		ex ex	9401.61-1000 9401.61-9000

HS 제9401호에는 제9402호의 의료용 또는 이발소용의 의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앉을 것이 분류된다. 이 중 소호 제9401.6호에는 항공기용, 차량용 의자, 회전의자, 침대 겸용 의자, 대나무와 등나무로 만든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자 중 프레임이 목재인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6단위 소호인 제9401.61호에는 이 중에서도 ‘upholstered’인 것만을 포함한다. 소호 제9401.61호 해설서는 ‘upholstered’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제9401호 해설서

[소호해설] 소호 제9401.61호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upholstered seat)’는 예를 들면, 솜뭉치·삼부스리기·동물의 털·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물·가죽·플라스틱 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씌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속을 대는 재료를 덮어씌우지 않았거나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하얀 직물로 만든 커버만을 갖춘 의자[‘무슬린 상태의(in muslin)’ 속을 댄 의자라고 한다]·얇은 부분이나 등을 대는 쿠션을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러한 쿠션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하는 의자와 속을 대기 위한 나선형의 스프링을 갖춘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분류한다. 한편, 수평으로 되게 움직여주는 인장스프링이 있고, 강선(steel wire)으로 만든 격자와 팽팽한 직물 등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으로 분류하는 의자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속을 대는 재료나 스프링과 같은 삽입물이 없이 식물·가죽·플라스틱제 쉬팅과 같은 재료로 직접 덮어씌운 의자와 한겹의 직물에 셀룰러 플라스틱의 얇은 충을 넣어 보강한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소호 제9401.61호에는 목재의 뼈대를 갖춘 기타의 의자로서 목재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목재 뼈대의 전부 또는 일부, 특히 앉거나 기대는 부분 혹은 팔을 걸치는 부분에 스프링이나 완충재를 채운 쿠션이나 지지물을 덧댄 형태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지지물은 가죽, 직물, 플라스틱 등의 외피로 이뤄진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내부에 속을 대는 재료를 보강하지 않고 단순히 가죽, 직물, 플라스틱 쉬팅(sheeting)을 붙인 정도의 것은 이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HS 제9401호의 용어는 ‘seats … <후략>’이며, 국문 관세율표는 이를 ‘의자’로 번역하고 있다. 개념상 seat는 chair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문에서는 seat와 chair 모두 일반적으로 ‘의자’라 표현한다. 미국의 HTSUS는 seat의 범주 내에서 chair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즉, 제9401호에 포함되는 의자(seat)로서 chair인 것과 chair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HSK에는 이 소호에 2개의 10단위 코드(제9401.61-1000호, 제9401.61-9000호)가 있으나 이 코드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포고문에서는 우선 티크(teak)목으로 만든 의자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티크가 생산되지 않으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티크목을 수입해 가구를 제조한 뒤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추가관세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도 포고문에서는 어린이용의 것(chair와 그 밖의 seat)을 제외하고 있다. 즉, 소호 제9401.61호의 물품 중 티크목으로 만든 것과 어린이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 그림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그 프레임이 티크목이 아니라면 모두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전의자

침대 겸용 의자

속을 대지 않은 의자

어린이용 의자

□ 그 밖의 목제가구 및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3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생략>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0	00	- 벤트우드(Bent-wood) ³⁾ 가구		
			- 기타		
	60	00	-- 자동차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90		-- 기타		
		40	--- 식탁		
		60	--- 고정설치형 캐비닛	ex	9403.40-9000
		80	--- 기타		
<생략>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0	00	- 벤트우드(Bent-wood) 가구		
	80		- 기타		
		10	-- 어린이 보호용 놀이울 및 차단 울타리		
		40	-- 식탁		
			--- 기타		
		89	---- 티크목으로 만든 것		
		93	---- 기타	ex ex ex ex ex	9403.60-1000 9403.60-9010 9403.60-9020 9403.60-9030 9403.60-9090
9403.9			부분품		
9403.91	00		- 목재로 만든 것		
		05	-- 유아용 침대, 아기침대, 요람 및 흔들침대용 부분품		
		10	-- 어린이 보호용 놀이울 및 차단 울타리용 부분품		
		80	-- 기타	ex	9403.91-0000

3) 목재를 깎거나 조각하는 대신, 열과 증기를 가해 구부러져 만든 가구를 말한다.

제9403호에는 제9401호와 제9402호의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류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미국 포고문에서는 제9403.40호의 ‘주방용 목재가구’와 제9403.60호의 ‘그 밖의 목재가구’, 그리고 제9403.91호의 ‘목재로 만든 부분품’ 중 HTSUS 기준으로 3개 코드만 수입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수입조정 대상물품은 HTSUS 제9403.40.9060호의 ‘고정설치형 캐비닛(cabinets desig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이다. 제9403.40호의 주방용 가구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보통 주방(kitchen)에 위치한 싱크대나 수납장일 것이다. HTSUS의 용어상 고정설치형 캐비닛이란 주방용 싱크대의 상하부 수납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싱크대는 상하부의 고정식 수납장과 하부 수납장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철강제의 수반(basin)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품목분류사례(NY A81342, 1996.4.11.)에서는 함께 제시된 싱크대 유닛에 대해 목제의 수납장은 제9403.40.9060호에, 철강제의 수반(basin) 부분은 제7324.10호에 각각 분류한 바 있다. 주방용 싱크대를 구성하는 모든 물품이 미국의 수입조정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조정 대상인 두 번째 물품은 HTSUS 제9403.60.8093호의 ‘그 밖의 목재가구’인데, 여기에는 벤트우드(Bent-wood) 방식으로 만든 것, 티크목으로 만든 것, 어린이용 보호울타리, 식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소호 제9403.60호에는 사무실용, 침실용, 주방용을 제외한 모든 목재가구가 분류되므로 범위가 매우 넓고 적용되는 품목도 다양하다.

마지막 물품은 HTSUS 제9403.91.0080호의 ‘목재로 만든 그 밖의 부분품’이다. 여기에는 목재로 만든 가구 부분품 중 요람, 흔들침대, 놀이울, 보호울타리 등 어린이용 가구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이는 대미 수출에서 목제의 가구 부분품 수출이 목제의 가구 완성품 수출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완제품 상태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품목의 부분품은 말할 것도 없고, 식탁, 침대, 책상 등 그 자체로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닌 물품의 부분품까지도 수입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조립 가구나 유닛형 가구 수출 시 제9403.9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매품 지식-1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발 행 일 2026년 3월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총 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장
주 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문 의 지식사업실(02-3416-5112)

홈 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 ※ 본 자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있습니다.
 -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